

북한의 정치범 수용시설

2013 북한 정치범수용소 개정판



김수업
이규창
이금순
최규빈
홍예선

북한의 정치범 수용시설

2013 북한 정치범수용소 개정판

김수암
이규창
이금순
최규빈
홍예선

목차

I. 서론	7
1. 발간 목적	8
2. 연구 방법	9
3. 변화 개요	10

II. 누가 어떻게 수용되는가?	11
1. 정치범의 실재	12
2. 수용 사유	13
3. 수용 절차	17
4. 피수용자 관리·통제	23
5. 사회 복귀와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적 삶	24

III. 어떻게 운영되는가?	31
1. 현재 운영 중인 관리소·정치범교화소	32
2. 폐쇄된 관리소	93
3. 수감규모	98

IV. 국제사회는 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는가?	101
1. ‘인도에 반한 죄’의 핵심 근거	102
2. 유엔의 지속적인 우려 표명	103
3. 개별국가의 우려와 관심 표명	106
4. 대북 인권제재의 핵심 사유	109
5. 뮤지컬 및 영화를 통한 관심 제고	111

V. UPR 권고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113
1. UPR 권고 내용	114
2. UPR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관심 대상	116

VI. 결론: 어떻게 할 것인가?	123
참고문헌	126
부록: 18호 관리소 시설현황도	129, 131

표 목차

10	<표 I-1> 관리소 운영현황
27	<표 II-1> 북한의 주민 계층 및 성분 분류
28	<표 II-2> 북한의 주민대장 예시
99	<표 III-1> 전체 추정 수용규모
104	<표 IV-1> 유엔 북한인권결의의 중 정치범수용소 관련 주요 내용
108	<표 IV-2> 유럽의회의 북한인권결의와 관리소 관련 주요 내용
114	<표 V-1>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관련 UPR 권고
115	<표 V-2>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관련 UPR 권고 제안국
116	<표 V-3> UPR 1차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권고
117, 118	<표 V-4> UPR 2차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권고
119	<표 V-5> UPR 3차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권고
121	<표 V-6> UPR 4차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권고

그림 목차

10	<그림 I-1> 관리소·정치범교화소 위치
115	<그림 V-1>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관련 UPR 권고 비중

사진 목차

33	<사진 III-1> 14호 관리소 구역
34	<사진 III-2> 14호 관리소 경계·경비부대 위치
35	<사진 III-3> 14호 관리소 경비부대 본부
36	<사진 III-4> 14호 관리소 경비부대 중·대대급 시설
37	<사진 III-5> 14호 관리소 경계철조망
38	<사진 III-6> 14호 관리소 관리본부
39	<사진 III-7> 14호 관리소 관리자 마을
40	<사진 III-8> 14호 관리소 관리자 주택
41	<사진 III-9> 14호 관리소 수감자 마을 위치도
42	<사진 III-10> 14호 관리소 수감자 마을 예시
43	<사진 III-11> 14호 관리소 노역시설 위치도
44	<사진 III-12> 14호 관리소 탄광시설
45	<사진 III-13> 14호 관리소 소규모 산업시설
46	<사진 III-14> 14호 관리소 양어장(좌) 및 축사(우)
47	<사진 III-15> 14호 관리소 과수원
49	<사진 III-16> 16호 관리소 전체
50	<사진 III-17> 16호 관리소 경계·경비부대 위치
51	<사진 III-18> 16호 관리소 경비부대 본부
52	<사진 III-19> 16호 관리소 경비부대 중·대대급 시설

53	<사진 III-20> 16호 관리소 경계철조망	75	<사진 III-39> 18호 관리소 수감자 마을
54	<사진 III-21> 16호 관리소 관리본부	76	<사진 III-40> 18호 관리소 교육시설(자양학교)
56	<사진 III-22> 16호 관리소 관리자 마을	77	<사진 III-41> 18호 관리소 주요 노역시설
57	<사진 III-23> 16호 관리소 관리자 주택	78	<사진 III-42> 18호 관리소 과수원
58	<사진 III-24> 16호 관리소 수감자 마을 위치	79	<사진 III-43> 18호 관리소 탄광시설
59	<사진 III-25> 16호 관리소 수감자 마을 예시	80	<사진 III-44> 18호 관리소 축사시설
60	<사진 III-26> 16호 관리소 교육(좌)·보육시설(우)	81	<사진 III-45> 18호 관리소 노동단련대
61	<사진 III-27> 16호 관리소 주요 노역시설 위치	84	<사진 III-46> 25호 전체
62	<사진 III-28> 16호 관리소 과수원	85	<사진 III-47> 25호 경비시설
63	<사진 III-29> 16호 관리소 광산시설	86	<사진 III-48> 25호 관리본부
64	<사진 III-30> 16호 관리소 미상 산업시설	88, 89	<사진 III-49> 25호 수감동
65	<사진 III-31> 16호 관리소 축사시설	90	<사진 III-50> 25호 주요 산업시설
66	<사진 III-32> 16호 관리소 양어장	91	<사진 III-51> 25호 양어장
68	<사진 III-33> 18호 관리소 전체	92	<사진 III-52> 25호 축사시설
69	<사진 III-34> 18호 관리소 경계·경비부대	94	<사진 III-53> 15호 관리소 해체 전(前) 수감자 마을
70	<사진 III-35> 18호 관리소 관리본부	95	<사진 III-54> 15호 관리소 해체 후(後) 일반 농촌주택 신축
71	<사진 III-36> 18호 관리소 경비부대 관리본부	96	<사진 III-55> 15호 관리소 해체 전(前) 관리자 마을
72	<사진 III-37> 18호 관리소 경비부대 소대급	97	<사진 III-56> 15호 관리소 해체 후(後) 관리자 마을
74	<사진 III-38> 18호 관리소 수감주택		

I. 서론

1. 발간 목적	8
2. 연구 방법	9
3. 변화 개요	10

I. 서론

1. 발간 목적

국제사회는 2003년 이래 매년 유엔차원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통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여 왔다.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에 다수의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침해가 명시되어 있으며,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침해는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 사안으로 다루어져 왔다.¹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가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이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 배경에는 ‘북한 정치범 수용시설(이주민관리소와 정치범교화소)’의 존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² 북한정권은 정치적으로 체제 위협의 소지가 있는 주민들을 사회와 격리시키기 위해 별도의 정치범 수용시설에 관리하여 왔다. 정치범 수용시설은 마을형태의 ‘이주민관리소’와 교화소 형태의 ‘정치범교화소’로 운영되어 왔다. 특히 이주민관리소에서는 정치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연좌제 처벌이 이루어져 왔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시설에 대해 지금까지 정치범수용소(관리소 혼용)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부인과 달리 북한 내에 정치범 수용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이 북한 문헌을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관리소’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정치범교화소와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소에 정치범교화소를 포함하는 의미로 서술하였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 이래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면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침해 상황을 추적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정치범 수용규모 및 관리소별 실태를 담은 『북한 정치범수용소』 특별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보고서를 통해 통일연구원이 추정한 북한 정치범 수용규모(8만~12만 명)가 지금까지 통용되어 왔다. 이후 10여 년이 경과하였고, 일부 관리소가 폐쇄·이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통한 북한 정치범 수용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책권고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통일연구원이 북한 인권침해 중 가장 심각한 사안의 하나인 정

1 유엔차원의 북한인권결의는 1997년 시작된 유엔 인권위원회 소위원회(1997년~1998년)에서 시작하여 인권위원회(2003년~2005년, 인권이사회 전신)를 거쳐 인권이사회(2008년부터 현재까지)와 유엔 총회(2005년부터 현재까지)를 통해 채택되고 있다.

2 북한은 정치범이나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북한이 발간한 문헌을 통해 (이주민)관리소와 정치범교화소 및 정치범의 존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사업참고서』(사회안전부출판사, 1993), p. 16, p. 153.

치범 수용시설의 최근 실태를 담은 개정판을 발간하고자 하는 배경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역사적으로 북한 당국이 정치적으로 체제에 위협이 되는 세력을 어떻게 규명하여 왔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북한 정치범 수용시설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개선 압력이 북한 내 정책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을 기준으로 정치범 수용시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제기하고 문제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통일연구원은 본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치범 수용시설 관련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 방법

본 보고서는 2013년 이후 북한 정치범 수용시설의 변화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탈북민 면접조사³ 및 상업위성 사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북한 정치범 수용시설은 접근이 통제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시설 내 인권상황에 대한 증언은 수감 후 해제되었거나 경비원으로 근무한 극소수의 탈북민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2013년 당시 보고서 발간을 위해 추가로 6명의 탈북민(수감자 출신 4명, 관리성원 1명, 관리원 가족 1명) 면접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위해 매년 실시한 탈북민 면접조사를 통해 정치범 수용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제민 출신 탈북민(4명) 면접조사를 통해 18호 관리소(구 북창, 현 개천)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보고서 작성 시 정치범 수용시설 수감절차 및 해제절차를 파악하기 위해 법 기관 출신 탈북민에 대한 면접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북한 정치범 수용시설 관리성원 출신의 NK Watch 안명철 대표와의 면담도 수차례 진행하였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및 NK Watch 등은 북한 정치범 수용시설 내 변화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인공위성 사진 분석을 활용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왔다. 통일연구원은 기존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북한 정치범 수용시설 내 변화 상황 등을 검증하기 위해 상업위성 사진 분석 작업을 실시하였다. 18호(개천)의 경우에는 해제민 출신 탈북민을 통해 시설 확인 작업을 병행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주요 우려사항 및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제시된 정책권고들을 분석하고, 북한 정치범 수용시설 관련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3 기존의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에 표기된 고유 번호인 NKHR을 부여하였다.

3. 변화 개요

2013년 발간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이후 파악된 관리소의 운영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1> 관리소 운영현황

운영 / 폐쇄·이전 시기	소재지	관리주체	명칭	형태	통제구역
14호 운영	평남 개천시(외동리), 덕천시(삼길리), 북창군(봉창리, 잠상리)	국가보위성	관리소	마을	완전 통제구역
15호 폐쇄 (2019년경)	함남 요덕군 (구읍리, 입석리, 용평리, 평전리, 대숙리)	국가보위성	관리소	마을	완전 통제구역/ 반(半)통제구역 (혁명화구역)
16호 운영	함북 명간군(부화리), 어랑군(칠항리)	국가보위성	관리소	마을	완전 통제구역
18호 이전·운영 (2006년경)	기존 18호: 평남 북창군 이전 18호: 평남 개천시(자양리)	사회안전성	관리소	마을	반(半)통제구역 (혁명화구역)
22호 폐쇄 (2012년경)	함북 회령시 (행영리, 중봉리, 낙생리, 굴산리)	국가보위성	관리소	마을	완전 통제구역
25호 운영	함북 청진시(수성동)	국가보위성	정치범교화소	교화소	교화소 형태

출처: 통일연구원, 『북한 정치범수용소』 (서울: 통일연구원, 2013)와 사회안전부출판사, 『주민등록사업참고서』 등을 참조하여 재정리.

<그림 I-1> 관리소·정치범교화소 위치



II. 누가 어떻게 수용되는가?

1. 정치범의 실재	12
2. 수용 사유	13
3. 수용 절차	17
4. 피수용자 관리·통제	23
5. 사회 복귀와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적 삶	24

II. 누가 어떻게 수용되는가?

1. 정치범의 실재

북한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2024년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북한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정치범이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표현이 없고, 교화시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⁴ 그러나 북한의 주장과 달리 북한의 공식 문헌에는 정치범에 대한 내용이 있다. 1993년 사회안전부(현 사회안전성)가 발행한 『주민등록사업참고서』의 성분 및 계층 규정 기준에 ‘정치범교화(소)출소자’에 대한 설명이 그것이다.⁵ 성분 기준에 ‘정치범교화출소자’가 포함된다는 것은 북한의 주장과 달리 정치범교화소가 존재할 뿐 아니라 출소자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정치범 교화시설이 없다는 주장은 내부에서 이 시설을 관리소라 통칭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 기관 출신의 북한이탈주민 A에 따르면 북한에서 사건 기록 등 문건을 작성할 경우 정치범수용소라고 하지 않고 ‘관리소 대상’이라고 하며, 정치범수용소란 용어는 한국어에 와서 들었다고 한다.⁶ 일부 북한 주민들은 ‘닫긴 구역’으로 관리소를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언급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개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⁷

북한 공식 문헌에는 관리소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주민등록사업참고서』에 ‘정치범교화출소자’와 별개로 이주민관리소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다.⁸ 이를 미루어 볼 때 이주민관리소를 관리소라 축약해서 부르는 것이 일반화 된 것으로 보인다(이하 이주민관리소와 관리소라는 명칭 혼용).

4 “北, ‘공화국엔 정치범 없다’…인권단체 ‘철저한 거짓말’,” 『연합뉴스』, 2024.11.8.; UN Doc. A/HRC/58/11 (19 December 2024), para. 85. “There were no political prisoners or political prison camps in the vocabulary of the Criminal Law or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e laws used only terms such as criminals who committed anti-State offences and reform institutions. Those who committed anti-State crimes as provided in the Criminal Law were spies and terrorists who were sent by hostile forces. Such prisoners were kept separately from ordinary prisoners.”

5 사회안전부출판사, 『주민등록사업참고서』, p. 153.

6 NKHR2021000002-2 2025-04-22.

7 NKHR2020000048-2 2025-05-09; NKHR2025000004 2025-05-08.

8 “주민료해사업담당- 사회안전부 이주민관리소대상들에 대한 료해는 이주민관리소안전부 주민등록일군들이 하여야 한다. 국가안전보위부아래 이주민관리소(교화소 포함)대상들에 대한 료해는 국가안전보위부 7국이 맡아하여야 한다.” 사회안전부출판사, 『주민등록사업참고서』, p. 16.

국가보위성(국가안전보위부)과 사회안전성(사회안전부, 인민보안성)은 그 명칭이 약간씩 변경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부분에 한해 현재 명칭을 병기하고, 다른 곳에서는 당시의 명칭을 기재하였다.

관리소 외에 정치범교화소가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25호(청진)는 정치범교화소에 해당되는데, 청진시 수성동에 위치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흔하게 수성교화소나 청진교화소라고 칭했다. 하지만 북한 공식 문헌의 명칭에 따라 25호(청진)는 정치범교화소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통일부 『2024년 북한인권보고서』는 정치범수용소를 마을 형태와 교화소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고 서술하며 25호가 교화소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⁹ 또한 통일연구원과 국내외 인권 단체들도 25호가 교화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북한은 (이주민)관리소와 정치범교화소에 정치범을 수용한다. 관리소는 일반적으로 마을형태로 정치범 본인 외에 연좌제 적용에 따라 가족도 수용하며, 정치범교화소는 교화소 형태로 정치범 본인만 수감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관리소 또는 정치범교화소에 구분, 수감되는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관리소와 정치범교화소의 운영이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다.

2. 수용 사유

가. 반당·반혁명·반국가행위

1993년 사회안전부가 발간한 『주민등록사업참고서』는 정치범교화소와 관련하여 정치범교화(소) 출소자란 ‘반당적, 반혁명적,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감행한 죄로 교화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⁰ 이를 통해 정치범 수용시설의 수용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첫째, 반당적·반혁명적 범죄행위가 정치범 유형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것은 최고지도자의 지침(김일성 교시, 김정일 말씀, 김정은 지시), 노동당의 정책,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하 10대 원칙)에 반하는 행위들이 수용 사유임을 말해준다. 당 규약 서문은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조선노동당의 당 건설과 당 활동의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10대 원칙은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상과 노동당의 노선 및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하고(제4원칙), 김일성과 김정일의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10원칙). 2021년 북한은 「혁명사적사업법」을 제정하면서 혁명역사와 혁명업적을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김일성, 김정일과 함께 김정은을 명시함으로써(제2조) 김정은 개인 이상화를 법제화하였다.

둘째, 반국가적 범죄행위가 정치범 유형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것은 북한 형법상의 반국가·반민족범죄가 정치범 수용 사유임을 말해준다. 북한 「형법」(2023.12.24.)은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9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2024 북한인권보고서』(서울: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2024), p. 135.

10 사회안전부출판사, 『주민등록사업참고서』, p. 153.

조국반역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민족반역죄 등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로 규정하여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셋째, 북한에서의 예배, 성경책 배포 및 선교 등의 종교 활동도 정치범 수용 사유에 해당한다. 북한에서 종교 활동은 북한체제의 근간이 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유일사상에 반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반국가행위이며, 이는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나. 시대에 따른 반체제행위 변화

1) 운영 초기: 종파분자·반김일성 분자 수용

북한은 1947년부터 집단수용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해방 직후에는 지주, 친일파, 종교인 등을 수용하였으며, 1950년 6·25 한국전쟁 이후에는 주로 치안대¹¹ 가담자를 수용하였다. 정치범 수용시설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956년 반(反)김일성 음모사건인 이른바 ‘8월 종파사건’ 이후로, 종파분자들을 수용하다가 나중에는 반김일성 분자 등을 수용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범 수용시설의 기능은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체제를 반대하거나 최고지도자를 모독하는 경우 정치범 수용시설에 수용된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24』는 ‘말 반동’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 항상 언사를 신중히 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진술, 김정은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경우 수용된다는 진술, 김정은이 말한 것을 왜곡하거나 김정은 방침을 왜곡하여 집행한 경우 수용된다는 진술, 술자리에서 북한체제를 비판한 발언으로 국가보위성에 체포되어 수용되었다는 진술을 담고 있다.¹² 이와 관련하여 2022년 5월 17일 개정된 형법은 최고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공화국 존엄모독죄’를 신설하였다(제64조).¹³

2) 김정은 집권 전후: 탈북 관련 행위자 수용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탈북행위가 이어지고 탈북민이 증가하였다. 특히 김정은 집권 전후에 탈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에서 돈을 받거나 한국과의 전화 연결 및 통화, 한국행 기도, 한국행 알선행위 등도 정치범으로 수용하였다. 형법은 탈북행위를 반국가·반민족범죄의 하나인 조국반역죄로 간주하여, 최고 사형에 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제63조). 한국이나 외국에 중요 문건이나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정치범으로 수용하였다. 또한 간첩죄를 반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제67조).

11 1945년 해방 직후의 정치적 공백상태의 혼란 수습, 치안 확보, 개인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여운형이 설립한 임시경찰기구인 ‘건국치안대’를 말한다.

12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24』(서울: 통일연구원, 2024), p. 394.

13 본 보고서는 북한 법률을 다루고 있으므로 법률명 앞에 북한을 생략하였다.

다. 중대한 경제사범·일반범죄도 반국가·반민족범죄로 처벌

1) 경제정책에 반하는 행위

북한은 정치범죄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정치범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정책에 반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노동당 자금 횡령 등 북한의 경제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정치범으로 수용한다. 1996년부터 2024년까지의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1995년 12월 김정일이 달러를 은닉하는 자를 당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여 정치범으로 간주하라고 친필 서한으로 지시한 사례, 고려호텔 안내원이 외국방문객의 짐을 운반해 준 대가로 약간의 사례를 받고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수용된 사례, 2013년 철도 침목을 떼어 팔려다 붙잡혀 수용되었다는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¹⁴ 통일부의 『2024년 북한인권보고서』도 김일성 별장 건설 중 건설자재를 집으로 가져가 사용했다는 이유로 수용된 사례, 당 자금 횡령과 김정은 방침 과제를 허위 보고했다는 이유로 수용된 사례, 인민보안성 간부였던 외삼촌이 원유 횡령 등의 혐의로 수용된 사례 등을 정치범으로 기록하고 있다.¹⁵

2) 인신매매, 한국 영화 시청

일반범죄에 해당하지만 사안이 무거운 경우에도 정치범 수용시설에 수용한다. 인신매매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한국과 관련된 경우 정치범 수용시설에 수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24』는 2015년 여맹 소속의 한 여성이 70명을 중국에 넘기려다 적발되어 수용된 사례, 2016년경 양강도 김정숙군 인민반장이 인신매매 과정에서 한국으로부터 돈을 받아 수용된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¹⁶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와 문화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영화 및 녹화물 관련 행위도 정치범 수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다량의 마약을 거래한 경우에도 정치범 수용시설에 수용하였다. 한 예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24』는 2015~2016년경 한국에 있는 친척과의 전화, 한국 영화 시청, 마약, 인신매매 등 여러 죄를 중복해서 저지른 지인이 수용되었다는 사례, 2006년 국가보위부원이 중국으로 헤로인 40kg을 거래하다가 발각되어 수용되었다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¹⁷

14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20』 (서울: 통일연구원, 2020), p. 112, p. 119; NKHR2017000074 2017-08-28.

15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2024 북한인권보고서』, p. 145.

16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24』, p. 395.

17 위의 책, p. 398.

3) 사건조서 작성 시 반국가·반민족범죄 규정 적용

당 자금 횡령, 철도 침묵 절도, 원유 횡령 등의 경제범죄는 형법상의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행위들은 국가재산훔친죄, 국가재산빼앗은죄, 국가재산속여가진죄, 국가재산횡령죄, 국가재산대량약취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형법 제5장의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로 편제되어 있다. 원유 같은 경우에는 전략예비물자로도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전략예비물자조성 및 전시생산준비태만죄, 군수물자매매죄, 군수생산에 지장을 준 죄 등은 제4장의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로 편제되어 있다. 인신매매와 관련이 있는 유괴죄는 인신을 침해한 범죄로(형법 제9장),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로(형법 제6장) 각각 편제되어 있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관점에서 정치범죄로 보기 어려운 행위인 경우에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고지도자의 지침/방침, 노동당 정책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 반국가·반민족범죄의 굴레를 씌워 정치범 수용시설에 수용하고 있다. 북한 법 기관에¹⁸ 종사하다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B에 따르면 실무에 있어 사건조서를 작성할 경우 경제범죄나 일반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라도 경우에 따라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¹⁹ 이러한 행태가 가능한 것은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의 지침이 초법적 규범으로써 당·정·군을 통해 집행되기 때문이다. 10대 원칙은 최고지도자의 지침, 노동당의 방침이 곧 법임을 강조하고 있다.²⁰ 2011년 북한이탈주민 8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상생활 속에서 가지는 규범력의 순서는 김정일 말씀(지시) → 당의 명령 → 내각의 결정 → 당 간부 지시 → 헌법(일반법)의 순이라는 응답이 52.9%를 차지하였다.²¹

18 북한에서 법 기관은 보위기관(국가보위성), 검찰기관(검찰소), 사회안전기관(사회안전성)을 지칭한다.

19 NKHR2025000002 2025-04-25.

20 제5원칙: ...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 당의 로선과 방침, 지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

21 최봉대, 『북한이탈주민 법의식 사례 연구』 (통일부 정책연구용역결과보고서, 2011), pp. 10~12.

3. 수용 절차

가. 관련 규정 미공개

「형사소송법」(2021.1.20.)에 따라 형사사건의 처리는 수사→예심→기소→재판 단계로 진행된다.²² 수사와 예심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보위기관(국가보위성), 검찰기관(검찰소), 사회안전기관(사회안전성)의 3개 법 기관에서 취급한다. 보위기관의 수사원과 예심원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을 수사, 예심하는데 북한에서는 이를 보통 보위성(보위부) 사건이라고 한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사건(보위성 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수사와 예심은 검찰기관과 사회안전기관의 수사원, 예심원이 담당한다(제50조).²³ 예심절차가 종결되면 예심원은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며(제253조, 제254조), 기소는 검사가 재판소에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제261조). 재판은 재판소에서 하는데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은 도(직할시) 관할로 규정되어 있다(제47조). 중앙재판소는 필요한 경우 하급재판소인 도(직할시)재판소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직접 재판할 수 있다(제49조).

형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는 (유기·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²⁴ 특히 8개 범죄(국가전복행위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공화국 존엄모독죄, 파괴·암해죄, 반국가선전·선동죄,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민족반역죄)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61조~제73조).

형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을 종합하면, 반국가 및 반민족사건은 보위기관인 국가보위성이 수사 와 예심을 진행한 후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고, 검사의 기소에 의해 도(직할시)재판소 또는 중앙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소가 노동교화형을 선고하면 범죄자가 교화소에 수감되거나 사형에 처해지는 구조이다.

북한 법규상으로는 관리소 수용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공개,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볼 때 형사법 외에 관리소만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규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22 북한의 예심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종결처분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수사에 해당하는 절차라 볼 수 있으나, 북한은 수사와 예심을 명백하게 구별되는 절차로 보고 있다. 북한의 예심은 예심원(수사일군(일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본격적인 수사활동과 강제처분을 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피심자(예심을 받는 자)에 대한 범죄의 유무 및 책임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실을 밝혀내고 기소 또는 사건기각의 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절차이다.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평양: 김일성종합대학, 1985), p. 55; 리재도, 『형사소송법학』(평양: 김일성종합대학, 1987), p. 127, 재인용: 법무부,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통합판)』(서울: 법무부, 2023), pp. 369~370.

북한 형사소송절차상 예심은 '사실상 재판의 성과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사실상 북한의 예심제도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핵심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평가이다. 법무부,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통합판)』, p. 372.

23 이밖에 북한에는 특별재판소(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군수재판소)가 있는데 특별재판소 관할사건의 수사, 예심은 특별법 기관의 수사원, 예심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50조).

24 노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로 정의하고 있다(형법 제38조).

나. 법 기관 협의, 당 안전위원회 결정을 통한 보위성 사건의 결정

법 기관 출신 북한이탈주민 A와 B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이 어느 기관 관할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 기관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²⁵ 따라서 1차적으로는 법 기관 협의를 통해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해당 여부가 판단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수준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최고지도자의 지침이나 노동당의 방침에 따라, 시기에 따라, 지역에 따라 보위성 사건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 안전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 안전위원회는 수사와 예심 사이에 개최되며 당 책임비서(위원장), 보위부장, 보위부 정치국장, 사건 담당 과장(예: 수사과장), 사건 취급자(수사 실무자) 등이 참여한다. 당 안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사건별로 사회적 교양 처분/ 교화소 등 형벌 부과/ 관리소 수용 대상 등의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위원장인 책임비서의 의견이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책임비서가 당 안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조직비서 등이 대리 참석하기도 하지만 결정과정에서 반드시 책임비서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는다고 한다.

이와 같은 법 기관 협의 및 당 안전위원회 개최에 의해 보위성 관할 여부 등 기본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면 보위성이 진행하는 예심 단계로 넘어가 사건이 사실상 확정된다. 형사소송법은 예심의 임무가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며(제144조), 예심 단계에서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5조). 이를 토대로 예심 단계에서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며(제154조), 예심이 종결되면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제253조, 제254조).

다. 절차 진행의 불명확한 법적 근거

예심 종결 이후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를 통해 수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첫째, 보위성 사건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처럼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는지 불명확하다. 또는 보위성이 독자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지도 파악되지 않는다. 둘째, 형사법 등 공개 및 입수된 북한 법규 외에 내부 문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1) 보위성 사건 절차 진행에 대한 상반된 진술

절차진행 문제에 대해서는 법 기관 출신 북한이탈주민들 간의 진술이 엇갈렸다. 기존 북한이탈주민 진술에 따르면, 북한에는 국가보위성이 진행하는 정치범 재판제도가 존재한다고 한다. 다시 말

25 NKHR2021000002-2 2025-04-22; NKHR2025000002 2025-04-25.

해 형사소송법 규정과는 달리 재판까지 국가보위성이 담당한다는 것이다. 보위원 출신 북한이탈주민 C의 2005년 진술에 의하면, 예심 과정에서 도 보위부 심문을 통해 피의 사실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국가보위성 검찰국에 보고하고, 검찰국에서 범죄행위가 확실하다고 결정할 경우, 국가보위성 검찰국 검사가 판사로서 중앙재판소 명의로 판결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관리소 수용 여부도 국가보위성이 판단하며, 판단 기준으로 삼는 문건은 없다고 하였다.²⁶ 국가보위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북한이탈주민 D도 2005년 면접에서 예심이 끝난 후, 보위성 검찰국에서 검사가 내려와 최종 판결을 하기 때문에 결국 정치범의 경우에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²⁷ 2006년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자료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국가보위성이 정치범 판결을 한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²⁸

이와 달리 법 기관 출신 북한이탈주민 A의 2025년 진술에 의하면, 내부 규정에 따라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고 한다. 이 내부 규정에 따르면 반국가·반민족범죄행위의 사안이 엄중한 경우 관리소 수감 혹은 즉결 처형까지 가능하며, 엄중성이 덜한 경우에는 재판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관리소만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규는 존재하지 않고 반국가·반민족사건을 포함한 모든 형사사건은 동일한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고 강조하였다. 법 기관 출신 북한이탈주민 B도 법 기관, 즉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검찰기관은 모두 동일한 법에 따라 형사사건 절차를 진행한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A는 내부 규정은 존재하지만 자신은 직접 보지 못해 내부 규정의 명칭과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였다.

2) ‘잠정’이라 불리는 내부 규정

북한이탈주민 B는 내부 규정을 ‘잠정’이라 칭한다고 하였다. 그 근거로 「법제정법」(2021.10.19.)을 들 수 있는데 이 법은 잠정적인 법 문건의 명칭에는 잠정이라는 표현을 덧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2조). 잠정은 명칭 그대로 잠정적이라는 점에서 최고지도자의 지침 또는 노동당의 방침에 따라 규율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의 지침이 초법적 규범으로 개별 법규보다 우월적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 A도 내부 규정에 교시 형태로 하달된 것들이 ‘잠정’으로 반영된다고 진술하였다.

북한에서 잠정이 표기되어 있는 형사사건 관련 내부 규정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비밀보호법」(2023.2.2.)은 노동당 및 국가 정책 집행과 관련한 내용, 국가보위부문과

26 북한이탈주민 ○○○, 2005년 4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27 북한이탈주민 ○○○, 2005년 10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28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서울: 법원행정처, 2006), p. 31.

관련한 내용, 특히 형사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국가비밀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제8조). 국가비밀누설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고(형법 제258조), 국가비밀분실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제259조).

한편, 사회안전부 문헌은 정치범교화(소)출소자란 반당적, 반혁명적,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감행한 죄로 ‘교화’를 받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문헌은 정치범교화(소)출소자에 대해 서술하면서 교화 기간 혹은 교화를 받은 이후에 무죄로 판명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정치범교화(소)출소자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⁹ 이를 통해 정치범교화소의 경우에는 재판 받고 형기도 정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노동교화형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규정(제38조)과 모든 형사사건은 동일한 법에 근거하여 진행된다는 북한이탈주민 A와 B의 진술, 사회안전부 문헌을 종합하면 재판소에서 재판절차를 거쳐 교화형을 받은 사람이 정치범교화소에 수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법적 근거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북한 법규와 ‘잠정’으로 표기되어 있는 내부 문건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기존에 정치범은 국가보위성이 재판한다는 진술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치범교화소 수감이 국가보위성의 독자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재판소 재판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3) 관리소와 정치범교화소의 수용 절차 진행이 다를 가능성

사안에 따라 법적 처리 절차가 다르다고 한 북한이탈주민 A의 설명에 따르면 관리소와 정치범교화소 수용 절차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의 2024년 북한인권보고서도 정치범수용소 수용 시 재판 여부는 수용 이유 및 사안에 따라 다르게 조사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주민관리소와 정치범교화소의 상이한 법적 절차로 인해 발생한 진술의 차이일 가능성이 있다. 관리소와 정치범교화소의 법적 절차와 수용 기준(사유)은 ‘잠정’이라 표기되어 있는 내부 문건에 규정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어렵다.

라. 연좌제 적용

북한은 본인 외에 가족이나 친척까지도 연계해서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연좌제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1996』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함께 처벌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친척까지도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

29 사회안전부출판사, 『주민등록사업참고서』, p. 153.

으로 서술하고 있다.³⁰ 이에 비해 2010년대 중반에는 연좌제를 적용하는 범위가 직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이 득문 사항을 토대로 진술한 바에 따르면, 2014년경 모녀가 한국행을 기도하다 붙잡히자 할머니까지 정치범 수용시설에 보내졌다고 한다.³¹ 통일부의 2024년 북한인권보고서는 정치범 수용시설에는 처벌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안의 경중 또는 처벌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직계혈족 및 방계혈족까지도 수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서술하고 있다.³²

더불어 시기에 따라 연좌제 적용 실태가 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통일연구원의 조사 결과, 예전에는 가족이 탈북하여 한국으로 갔다는 이유로 수용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한국행이 많아지면서 모든 사건을 그렇게 처리하기 어려워 가족이 정치범 수용시설에 수용되는 사례는 많이 줄었다는 진술이 2015년과 2017년에 수집된 바 있다.³³

또한, 연좌제가 적용되어 가족이 수용된 경우에도 아이는 관리소에서 내보냈다는 진술, 한국행을 기도한 가족을 관리소에 수용하면서 아이들은 제외하였다는 진술이 다수 수집되었다.³⁴ 2019년 조사에서도 2015년 일가족이 한국행을 위해 탈북하다 정치범 수용시설에 수용되었으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제외되었다는 진술이 수집되었다.³⁵

연좌제는 국제인권규범에 반한다. 북한이 당사국인 자유권규약은 14조 제1항에서 ‘자신에 대한’ 범죄 혐의 또는 소송상 권리·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관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2019년 3차 UPR에서 형법에 연좌제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³⁶ 연좌제 처벌 근거와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관리소와 정치범교화소 모두 연좌제가 적용되고 있는지도 파악되어야 한다.

마. 배우자의 이혼 의사 확인

일방의 배우자가 범죄 혐의로 수용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혼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5호(청진)에 1989년

30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1996』 (서울: 통일연구원, 1996), p. 164.

31 NKHR2015000028 2015-02-10; NKHR2017000067 2017-08-28.

32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2024 북한인권보고서』, p. 145.

33 NKHR2015000028 2015-02-10; NKHR2017000067 2017-08-28.

34 NKHR2015000015 2015-01-27; NKHR2015000030 2015-02-10; NKHR2016000171 2016-11-01; NKHR2019000033 2019-06-03.

35 NKHR2019000033 2019-06-03.

36 UN Doc. A/HRC/42/10 (25 June 2019), para. 76. The Criminal Law did not contain the penalty of “guilt by association.”

수용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은 수용 당시 ‘같이 가겠느냐, 이혼하겠느냐’고 물어봤다고 진술하였다.³⁷ 이혼 의사 확인은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죄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0년 한 관리소에 수용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은 사위가 있다면 딸과 이혼시키고, 며느리가 있다면 아들과 이혼시켜서 사위, 며느리는 관리소에 수용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³⁸ 또한 성별(아들이나 딸이냐)에 따라, 자녀의 결혼 여부에 따라 관리소 동반 수용 여부가 달랐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 관리소 경비대 출신으로 현재 NK Watch를 맡고 있는 안명철 대표에 따르면, 이혼할 경우 아내와 딸은 관리소 수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아들은 부모가 이혼해도 관리소에 수용되었다고 한다. 또한 부모의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딸이 기혼인 경우에는 관리소에 수용시키지 않았다고 한다.³⁹ 이는 혈통이나 가부장제를 중시하는 북한의 전통적인 가족 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에도 이 같은 양태가 지속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북한의 『주민등록사업참고서』에 따르면 성분 및 계층 규정기준과 예외를 설명하고 있다. ‘체포된 자의 가족’ 및 ‘정치범교화자 가족’에서 ‘체포된 자(또는 정치범교화자)와 이혼한 사람, 남편(아내)가 체포된 다음(또는 교화소에 들어간 다음) 재결혼한 사람과 그가 데리고 간 나이 어린 아들딸’은 이러한 자들의 가족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⁴⁰

그러나 어떤 절차에 의해 이혼이 진행되었는지, 이혼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는지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북한에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한 이혼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재판에 의한 이혼제도만 존재한다(가족법 제20조).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재판소에 소송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22조). 소송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51조), 변호사 또는 소송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민사소송법 제62조). 「변호사법」(2023.12.5)은 피심자(예심을 받는 사람), 피소자(기소된 사람)와 그의 가족, 친척, 소속 단체 대표자의 신청과 수사원, 판사, 재판소의 의뢰에 따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정 또는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6조).

37 NKHR2011000008 2010-08-10.

38 NKHR2011000196 2011-09-06.

39 NKHR2025000001 2025-04-07.

40 사회안전부출판사, 『주민등록사업참고서』, pp. 155~156.

4. 피수용자 관리·통제

가. 통제 주체

관리소는 주체에 따라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관리소와 사회안전성이 운영하는 관리소로 구분할 수 있다(표 I-1). 북한 문헌도 사회안전부가 관할하는 관리소와 국가안전보위부가 관할하는 관리소가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국가안전보위부의 경우에는 7국을 관리 주체로 명시하고 있다.⁴¹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리소 가운데 14호(개천)와 16호(명간)는 국가보위성이 관리하고, 18호(개천)는 사회안전성이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문헌도 18호 관리소에 대해 ‘사회안전부 제18호 관리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⁴² NK Watch 안명철 대표는 당초 관리소는 모두 사회안전부 소속이었는데, 이후 1972년~1973년 사회안전부 산하 정치보위국이 분리하여 정치보위부로 독립하면서 일부 관리소를 보위부 관할로 변경하였다고 한다.⁴³ 관할이 변경된 시점은 1975년부터라는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진술도 찾아볼 수 있다.⁴⁴

관리소는 외곽의 전기 철책, 함정, 대못 등으로 외부와의 경계가 매우 삼엄하며, 탈출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⁴⁵ 이와 관련하여 안명철 대표는 사회안전부에서 보위부로의 일부 관할 변경 이유를 설명하면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자와 완전히 격리되어야 할 범죄자들의 분리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같은 설명은 같은 관리소라고 하더라도 국가보위성 관리소에 죄질이 더 좋지 않은 범죄자들이 수용되며, 국가보위성 관리소의 관리가 사회안전성 관리소에 비해 더욱 엄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1983년경 17호(덕성) 관리소를 폐쇄하는 과정에서도 이주민을 구분,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완전히 격리시켜야 할 범죄자는 14호(개천)로, 중대성이 덜한 범죄자는 18호(북창)로 이주시킨 것으로 보인다.⁴⁶

교화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25호(청진)는 국가보위성이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5호도 사회안전부 관할에서 위 시기 정치보위부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보위부 소속으로 관할이 변경되었다고 한다.⁴⁷

41 위의 책, p. 16. pp. 97~98, p. 205.

42 위의 책, p. 98.

43 NKHR2025000001 2025-04-07.

44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 정치범수용체계와 인권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p. 48.

45 NKHR2023000055-2 2024-03-12.

46 NKHR2025000004 2025-05-08.

47 NKHR2025000001 2025-04-07.

나. 완전통제구역과 반통제구역

1993년 사회안전부 자료는 이주민관리소 내의 통제구역을 설명하면서 완전통제구역과 반(半)통제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등록)대장에 반통제구역에 들어간 대상은 ‘혁명화’로 써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⁴⁸ 종래 관리소 내의 통제구역을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으로 구분하였는데 혁명화구역이라고 불려온 것은 반통제구역에서 혁명화를 거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하 반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 명칭 혼용). 현재 운영 중인 관리소 가운데 14호(개천)와 16호(명간)는 완전통제구역만을 운영하고 있고, 18호(개천)에는 혁명화구역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⁴⁹ 15호(요덕) 관리소에도 혁명화구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15호는 현재 폐쇄되었다.

5. 사회 복귀와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적 삶

가. 관리소에서의 해명·해제와 정치범교화소에서의 출소

1) 관리소에서의 해명·해제

정치범 혹은 정치적 위협분자로 체포된 다음 죄가 없다고 판명이 된 경우,⁵⁰ 즉 해명된 경우에는 원래 거주지로 복귀하게 된다. 심화조 사건으로 18호(구 북창) 관리소에 수용되었던 다수가 2001년 경 해명되어 사회로 복귀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⁵¹

해명 외에 이주민을 일반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해제’라고 한다. 해제 절차는 국가보위성이 주도한다. 이주민의 경우 사전 심의와 허가 절차를 거친다는 진술이 있다. 18호(구 북창) 이주민구역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한 북한이탈주민은 세대주가 속한 직장에서 해제 신청을 위한 문건을 제출하면 당 위원회 → 보안서 → 보위부 → 중앙 조직의 단계를 거쳐 중앙 조직⁵²에서 비준(허가)되면 해제되었다고 한다.⁵³

한편, 사회안전부 문헌은 완전통제구역, 반통제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이주민관리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자료에 근거하여 법적 제재를 받은 관계를 주민대장의 주민등록카드란에 써야 한다

48 안전보위기관에 체포되어 교화소, 통제구역에 들어간 대상은 ... 교화소에 들어간 대상은 ‘체포’, 완전통제구역에 들어간 대상은 ‘이주’, 반통제구역에 들어간 대상은 ‘혁명화’로 써야 한다. 사회안전부출판사, 『주민등록사업참고서』, p. 40.

49 NKHR2025000004 2025-05-08.

50 사회안전부출판사, 『주민등록사업참고서』, p. 155.

51 NKHR2025000004 2025-05-08.

52 조직지도부의 보위부 담당 등으로 파악된다.

53 NKHR2025000004 2025-05-08.

고 서술하고 있다.⁵⁴ 이는 완전통제구역에서의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실제 해제 사례는 수집되지 않았다. 완전통제구역에서의 해제 여부와 절차는 향후 지속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2) 반통제(혁명화)구역의 석방 절차

관리소 내 혁명화구역에 수용된 피수용자들은 혁명화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회에 복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혁명화구역에 수감되었다가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후 바로 석방된 사례가 있어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25년 면담한 북한이탈주민은 2001년 12월 ○○군 보위부에서 취급(조사)을 받고 2002년 15호(요덕) 관리소 내 혁명화구역에 수용되었으며, 2002년 12월 평양보위부에서 간부가 내려와 혁명화(수용) 기간을 3년으로 통보하였다고 한다. 당사자는 총 3년간 혁명화 형기를 마친 후, 비밀유지 각서를 쓰고 출소하였다고 한다.⁵⁵

3) 정치범교화소 출소 사례의 조사·연구 필요

25호(청진)는 정치범교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른 정치범 수용시설과 함께 관리소로 지칭된 연유로 인해 교화소 관점에서의 사회 복귀 절차가 조사·연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노동교화형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8조의 해석에 의하면, 유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기(刑期)를 마치면 출소할 수 있고,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2013년 통일연구원의 『북한 정치범수용소』도 교화소 형태로 운영되는 25호의 경우 형기가 만료되면 출소가 가능한 경우와 평생 수감되어 석방이 불가능한 경우가 병존하는 것으로 서술하였다.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민증이 회수되고(공민등록법 제13조), 형 집행기간에는 국민의 권리 일부가 정지된다(형법 제38조).

무기 노동교화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기 단축 또는 만기 전 석방의 경우에는 형기가 줄어들다(형법 제59조). 또한 특별사면(특사)과 일반사면(북한에서는 대사라고 함)의 경우에는 형이 면제된다(형법 제58조). 특사는 국무위원장, 대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각각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헌법 제104조, 제116조, 형법 제58조).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 실제 사례들이 있었는지는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파악되어야 한다.

54 사회안전부출판사, 『주민등록사업참고서』, p. 34.

55 NKHR2025000003 2025-05-07.

나. 정치범교화소 출소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북한은 주민들을 성분과 계층에 따라 구분하여 노동당 입당, 군 입대, 대학 진학 등에 있어 사회적 차별을 하고 있다. 그 바탕이 되는 것이 주민(등록)대장인데 북한은 주민등록사업 실시를 통해 주민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다. 주민대장에는 <표 II-2>와 같이 성분과 계층을 비롯한 인적 사항을 기재한다. 계층은 기본군중, 복잡한 군중, 적대계급잔여분자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정치범교화(소) 출소자, 정치범교화자 가족은 복잡한 군중에 속해있다(표 II-1의 파란색). 이를 볼 때 정치범교화소 출소자와 그 가족들은 주민대장에 복잡한 군중으로 기재되어 사회적 차별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민등록법」(2016.8.10.)은 사회안전기관(즉 사회안전성)이 공민을 주민등록대장에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름, 성별, 난 날, 난 곳, 사는 곳과 직업, 결혼, 이혼 관계 같은 것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이는 주민등록사업과 주민등록대장 작성·보관·관리가 현재 진행형임을 말해준다.

<표 II-1> 북한의 주민 계층 및 성분 분류

3대 계층	기본 계층	1. 혁명가 2. 혁명가 가족 3. 혁명가 유가족 4. 영예군인 5. 영예전상자 6. 접견자 7. 영웅 8. 공로자	9. 제대군인 10. 전사자 가족 11. 피살자 가족 12. 사회주의 애국희생자 가족 13. 기타(당이 맡겨 준 혁명초소에서 오랫동안 변함없이 우리 당을 받들어 충실하게 일하면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핵심군중과 계급적 토대·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이 견실한 노동자·농민·병사·지식인)
	복잡한 계층	1. 인민군대 입대기피자 2. 인민군대 대렬도주자 3. 귀환군인 4. 귀환시민 5. 반동단체 가담자 6. 일제기관 복무자 7. 해방전사 8. 건설대 제대자 9. 의거입북자 10. 지대 관계자 11. 금강학원 관계자	12. 정치범교화출소자 13. 종교인 14. 월남자 가족 15. 처단된 자 가족 16. 체포된 자 가족 17. 정치범교화자 가족 18. 포로되었다가 돌아오지 않은 자의 가족 19. 해외도주자 가족 20. 지주 가족 21. 부농 가족 22. 예속자본가 가족 23. 친일파 가족 24. 친미파 가족 25. 악질종교인 가족 26. 종파분자 가족 27. 종파연루자 가족 28. 간첩 가족 29. 농촌십장 가족 30. 기업가 가족 31. 상인 가족
	적대계급 잔여분자	1. 지주 2. 부농 3. 예속자본가 4. 친일파	5. 친미파 6. 악질종교인 7. 종파분자 8. 종파연루자 9. 간첩 10. 농촌십장 11. 기업가 12. 상인
성분 (총 25개)	1. 혁명가 2. 직업혁명가 3. 노동자 4. 군인 5. 고농 6. 빈농 7. 농민 8. 농장원 9. 중농	10. 부유중농 11. 농촌십장 12. 부농 13. 지주 14. 사무원 15. 학생 16. 수공업자 17. 십장 18. 중소기업가	19. 애국적 상기업가 20. 기업가 21. 소시민 22. 중소상인 23. 상인 24. 종교인 25. 일제관리

출처: 사회안전부출판사, 『주민등록사업참고서』, pp. 121~162를 표로 정리. 일부 저자 강조.

*파란색: 정치범교화소, 빨간색: 관리소와 각각 연관

<표 II-2> 북한의 주민대장예시

주민대장번호 온천 27950

료해 및 주민대장세대등록부

평남도 온천군 온천읍 67반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번호	이름	남녀별	난 날	난 국	성분		직업	민족별	국적별	직장 지위	임주 관계	경력 관계	연고 관계	계층별	죄를 범한 경형	변동 정형
						출신	사회										
본인	온천 37981	김정호	남	1938.4.17	평남도 온천군 원읍구	로동	군인	로동당	조선 사람	조선	조선 로동자					기본	
인해	온천 37982	리순녀	녀	1940.2.19	평남도 대동군 팔정리	빈농	농민	로동당	"	"	부 양					기본	
만어들	온천 37993	김창국	남	1968.7.8	평남도 온천군 온천읍	로동	로동	로동	"	"	귀성 제업소 2직장 로동자					기본	
둘째 이들	온천 37984	김창남	남	1971.10.17	평남도 온천군 온천읍	"	"	"	"	"	온천읍 협동 농장원						
만딸	온천 37985	김창실	녀	1976.8.7	평남도 온천군 온천읍	로동	농민	로동당	"	"	온천녀자 고등중학교 학생						

출처: 사회안전부출판사, 『주민등록사업참고서』, p. 13. 굵은 글씨는 저자 강조.

다. 관리소 해제민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표 II-1>에는 앞의 수용 사유에서 살펴본 종교 관련 행위, 종파 행위, 간첩 행위 관련자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악질 종교인, 종파분자, 종파연루자, 간첩은 적대계급잔여분자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종교인, 악질 종교인 가족, 종파분자 가족, 종파연루자 가족, 간첩 가족은 복잡한 군중으로 분류되어 있다(표 II-1의 빨간색). 또한 ‘체포된 자 가족’도 복잡한 군중으로 분류되어 있다. 체포된 자 가족은 반당반혁명적 적대행위와 경제도덕적 범죄행위를 감행한 죄로 체포된 다음 소식이 없는 자의 직계가족, 안전보위기관과 안전기관에서 정치적위험분자로 이주시킨 후 소식이 없는 자의 직계가족으로 설명되어 있다.⁵⁶ 이는 관리소에서 해제된 북한 주민들, 즉 해제민들과 그 가족들이 주민대장에 복잡한 군중, 적대계급잔여분자로 기재되어 입당, 입대, 대학 진학 등에 있어 사회적 차별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2024년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도 마찬가지로 관리소 출신과 일반 주민을 구분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진술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이웃 주민이 해제민임을 알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주민대장은 도·시·군 당 위원회 조직부, 간부부 일군 등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⁷ 공민등록법은 공민증에는 이름, 성별, 난 날, 난 곳, 사는 곳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고만 규정(제10조)하고 있다(표 II-2 참조). 통일연구원의 2013년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공민증에 관리소 출신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고 ‘조선인민군 경비대 로동자’ 등으로 기재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반면 18호(구 북창) 해제민 출신 탈북민은 공민증 출생지에 ‘18호 관리소’ 명칭이 기재되었다고 진술하였다.⁵⁸ 다만 18호 관리소 해제민 출신 탈북민들은 해제민으로 군 입대 및 대학 진학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⁵⁹ 이와 같은 현상이 사회안전성 산하 18호 관리소 외의 다른 관리소에도 적용되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아 일반화하기 어렵다.

56 사회안전부출판사, 『주민등록사업참고서』, p. 155.

57 위의 책, p. 116.

58 NKHR2025000004 2025-05-08.

59 NKHR2020000048-2 2025-05-09; NKHR2025000004 2025-05-08.

III. 어떻게 운영되는가?

1. 현재 운영 중인 관리소·정치범교화소	32
2. 폐쇄된 관리소	93
3. 수감규모	98

III. 어떻게 운영되는가?

현재 운영 중인 관리소는 14호, 16호, 18호, 25호의 총 네 곳으로, 25호 교화소 형태를 제외하고 세 곳은 주로 일반 주민이 접근하기 힘든 산악 지역에 위치하며, 경비부대, 노역시설, 수감자 및 관리자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수감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관리소의 운영과 자급자족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로 이해될 수 있다. 노역시설은 관리소별로 약간씩 다르나, 과수원 및 광산, 양어장, 축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곳을 중심으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각 시설의 수용규모를 추정하고, 주요시설의 좌표도 함께 기재하였다. 한편, 폐쇄된 15호 관리소는 폐쇄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하였다.

1. 현재 운영 중인 관리소·정치범교화소

가. 14호 관리소

14호(개천) 관리소는 1965년에 건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⁶⁰ 2014년경 18호(구 북창) 지역 일부에 장성택사건 연루자들을 수감하면서 확장 운영되고 있다.⁶¹ 14호 관리소는 평남 개천시(외동리), 덕천시(삼길리), 북창군(봉창·잠상리)에 소재하고 있다. 전체 부지면적은 약 222km²이며, 시설 경계 철조망의 총 길이는 약 73km에 이르고 있다. 전체 14호 관리소를 둘러싸고 있는 철조망은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총 21개 경계초소가 식별되고 있다(사진 II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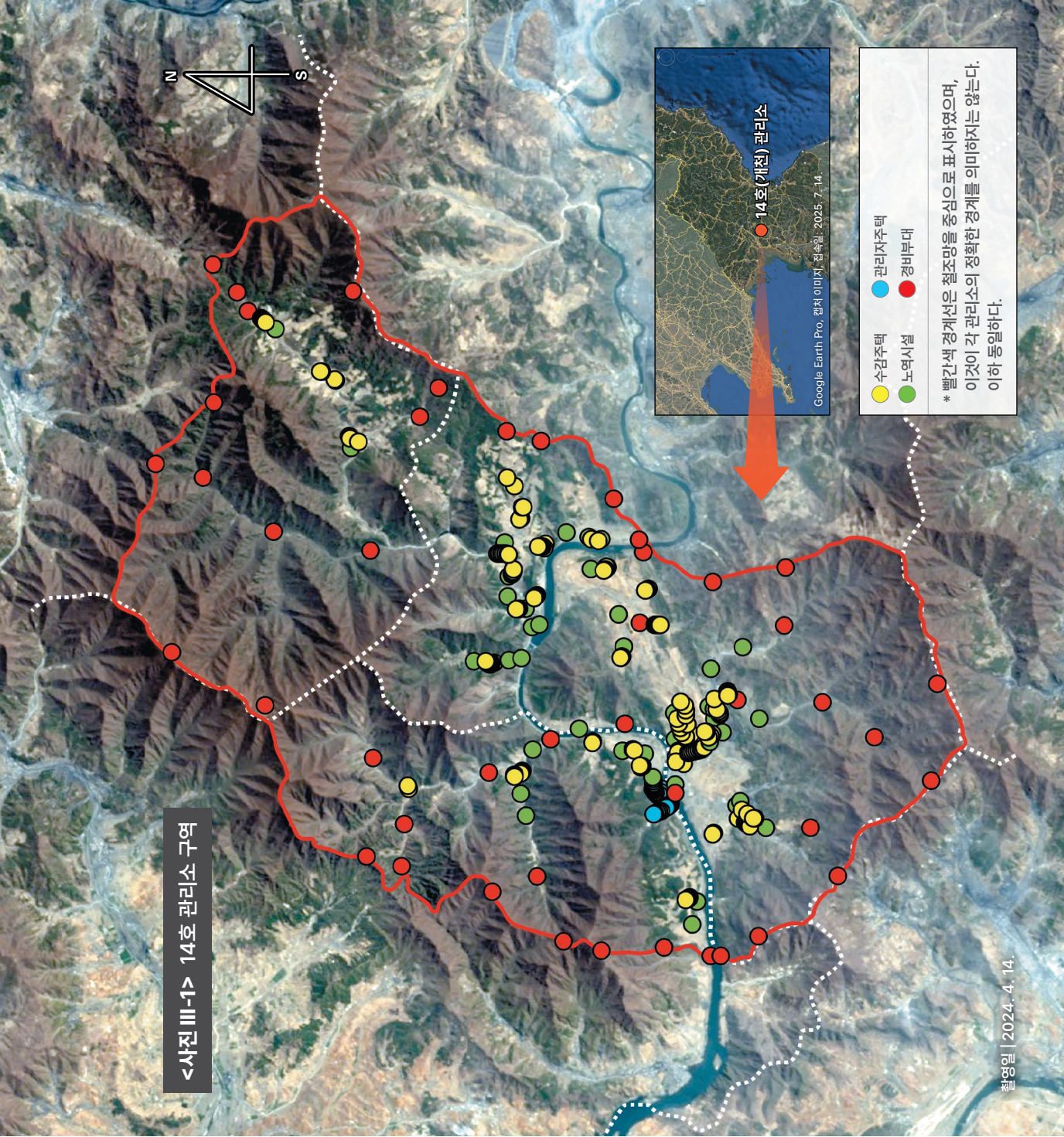
14호 관리소는 국가보위성 관할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보다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14호 관리소의 구체적인 실태에 대한 증언은 확보되지 않고 있어,⁶² 위성사진을 통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18호(구 북창) 관리소 지역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개방지역으로 운영되었다. 2013년에 18호(구 북창) 관리소 내 거주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장성택 사건 연루자들을 대거 이주시켰다.⁶³ 이로 인해 14호 관리소는 대동강을 가운데 두고 있는 18호(구 북창) 관리소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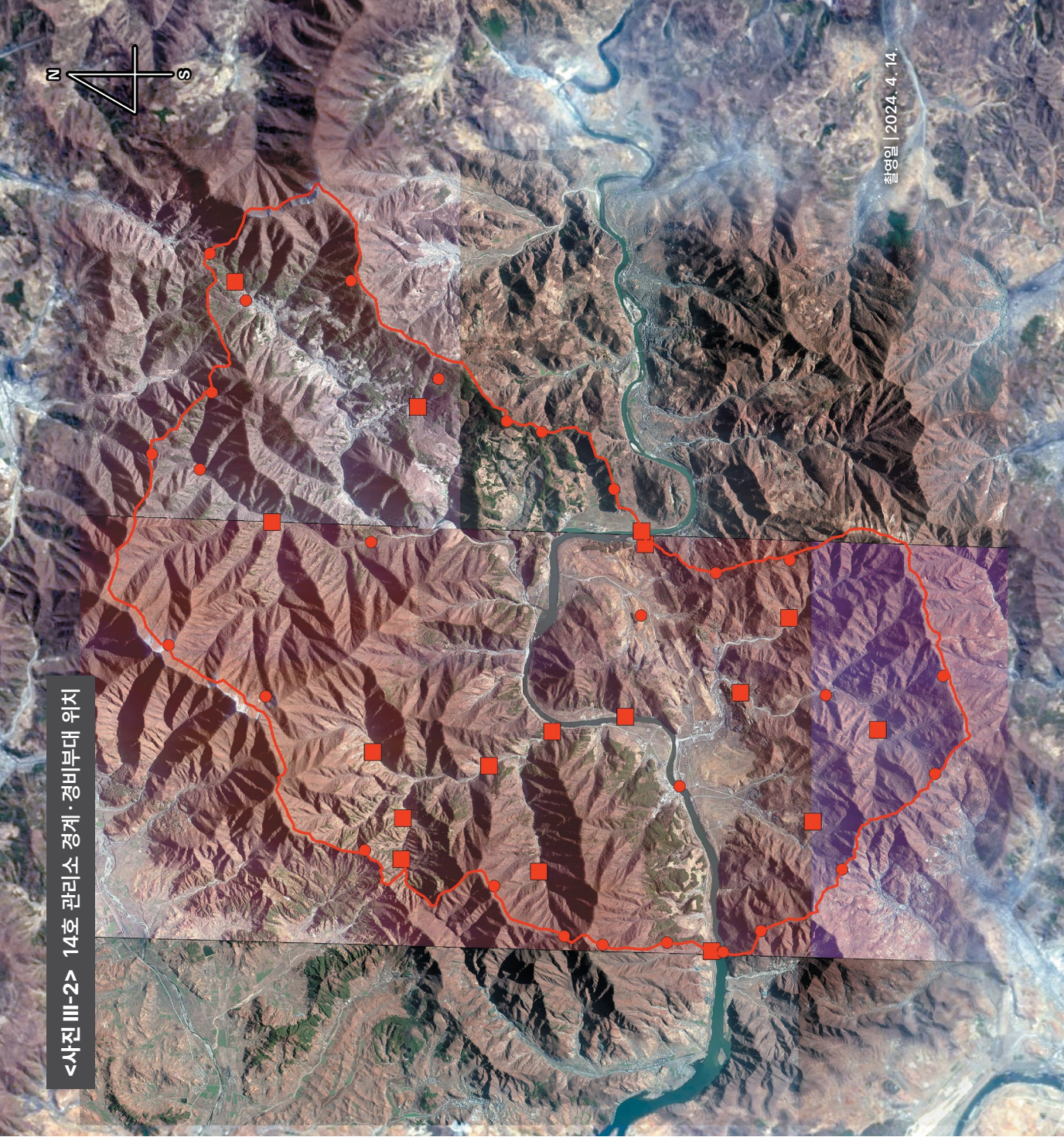
60 HRNK, *North Korea's Political Prison Camp Kwan-li-so No. 14*, Update 1, 2021.12.22.

61 NKHR2020000042 2020-10-31; NKHR2020000048-2 2025-05-09; NKHR2025000004 2025-05-08.

62 2013년 보고서에서는 14호 출신 탈북민으로 신동혁을 인용하였으나, 이후 14호 출신이 아닌 북창 18호 출신으로 판명되었다. 이후에도 탈북민을 통해 14호 관리소 관련 내용을 수집할 수 없었다.

63 NKHR2020000048-2 2025-05-09; NKHR2025000004 2025-05-08.





<사진 III-2> 14호 관리스 경계·경비부대 위치

촬영일 | 2024. 4. 14.



<사진 III-3> 14호 관리소 경비부대 본부

MAXAR
촬영일 | 2024. 12. 4.
39:34:10N, 126:03:29E



<사진 III-4> 14호 관리소 경비부대 중·대대급 시설

MAXAR

촬영일 | 2024. 12. 4.
39:31:17N, 126:04:47E



<사진 III-5> 14호 관리소 경계철조망

MAXAR

촬영일 | 2024. 12. 4.
39:30:27N, 126:05:41E



<사진 III-6> 14호 관리소 관리본부

MAXAR

촬영일 | 2024. 12. 4.
39:34:11N, 126:03:30E



<사진 III-7> 14호 관리소 관리자 마을

MAXAR

촬영일 | 2024. 12. 4.
좌표 | 4:13N, 126:03:23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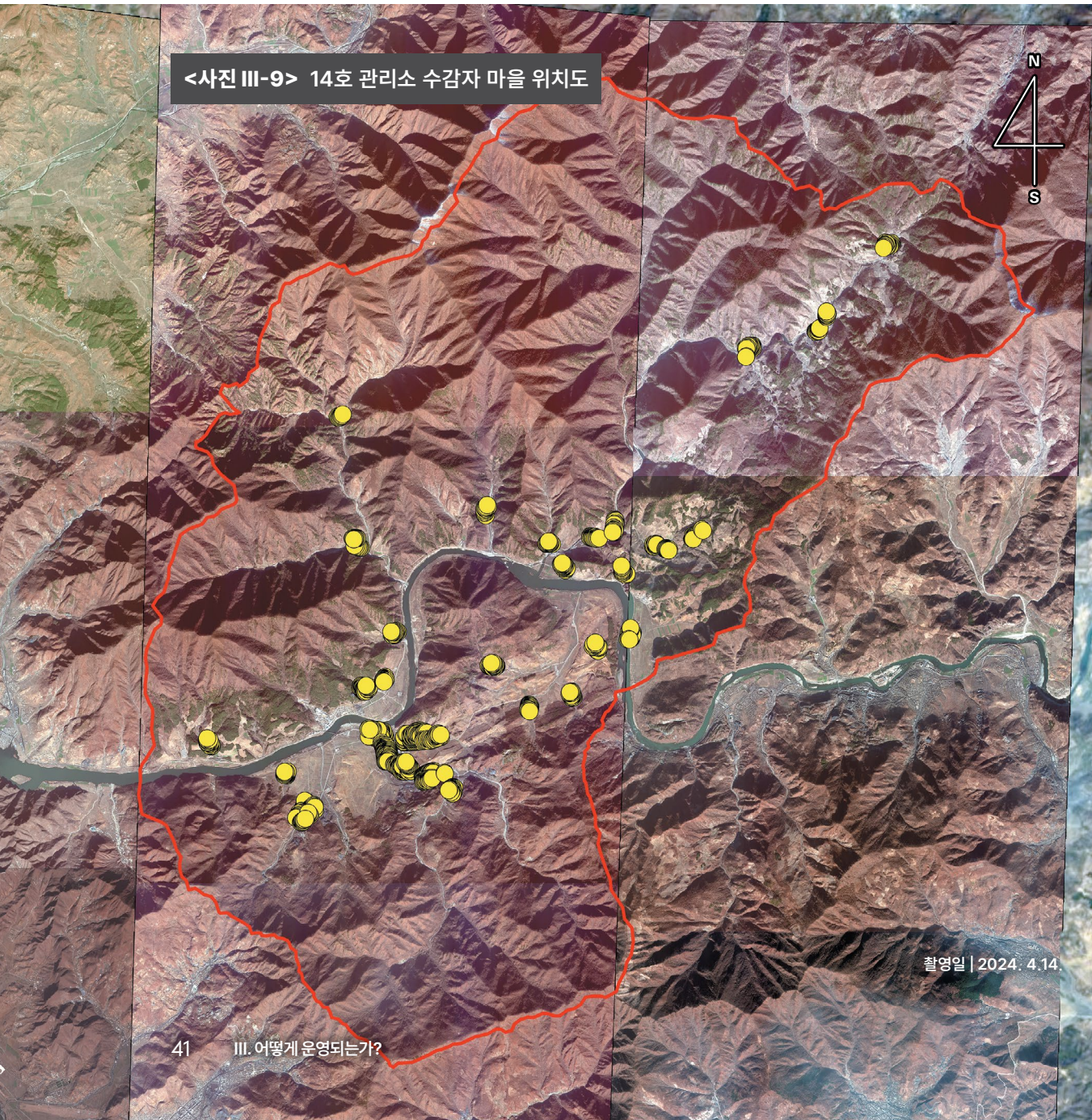


<사진 III-8> 14호 관리소 관리자 주택

MAXAR
촬영일 | 2024. 12. 4.

수감자의 주택규모는 2024년 기준 1,020채로 다른 관리소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으며, 전형적인 관리소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감자 마을은 수감주택 1채와 창고 1개동이 같이 배치되어 있으며(사진 Ⅲ-10), 수감자 주택 주변으로 수감주택 높이 절반 정도의 울타리가 조성되어 있다. 수감주택 주변으로는 탈곡장, 영농활동 생산물, 소규모 축사 등이 식별된다.

<사진 Ⅲ-9> 14호 관리소 수감자 마을 위치도



촬영일 | 2024. 4.14



<사진 III-10> 14호 관리스 수감자 마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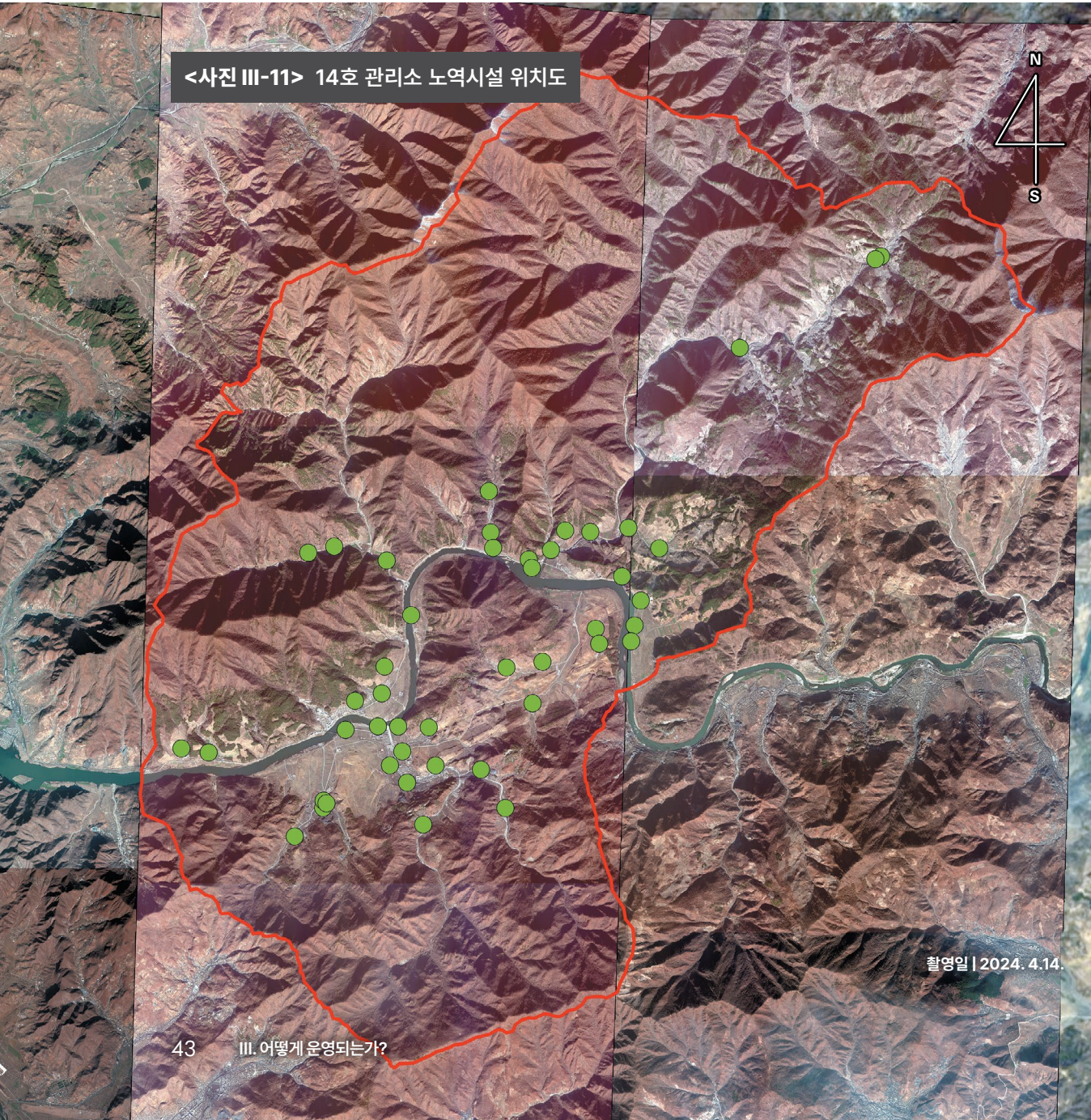
MAXAR

촬영일 | 2024. 12. 4.

좌대영상 39:36:17N, 126:08:43E

14호 관리소 수감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노역시설로는 광산 7개소, 소규모 산업시설 8개소, 양어장 7개소, 축사 21개소, 과수원 3개소 등이 있다(사진 Ⅲ-11 ~ Ⅲ-15 참조). 14호 관리소의 광산시설은 석탄만 생산되는 탄광이다. <사진 Ⅲ-13>은 증기 또는 연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산업시설로 추정되나, 그 종류가 무엇인지까지 식별하기는 어렵다. <사진 Ⅲ-15>의 과수원은 면적이 약 17.2만㎡에 이른다.

<사진 Ⅲ-11> 14호 관리소 노역시설 위치도



촬영일 | 2024. 4.14.



MAXAR

촬영일 | 2024. 12. 4.
39:33:3.6N, 126:06:01E

<사진 III-12> 14호 관리스 탄광시설



MAXAR

촬영일 | 2024. 12. 4.
촬영위도 | 39:36:39N, 126:08:18E

<사진 III-13> 14호 관리소 소규모 산업시설



MAXAR

촬영일 | 2024. 12. 4.
39:33:35N, 126:05:14E

<사진 III-14> 14호 관리스 양어장(좌) 및 축사(우)



MAXAR

촬영일 | 2024. 12. 4.
39:33:46N, 126:04:40E



<사진 III-15> 14호 관리소 과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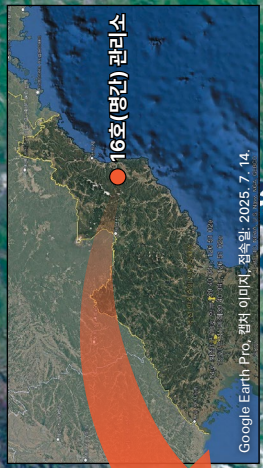
MAXAR

촬영일 | 2024. 10. 30.
39:36:29N, 126:07:00E

나. 16호 관리소

16호(명간) 관리소는 함경북도 명간군(부화리), 어랑군(칠향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경사도가 높은 산악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관리소 중 최대 면적인 435km²이다. 16호 관리소 지역을 둘러싼 이중으로 설치된 경계철조망(사진 Ⅲ-20)의 길이는 약 119.2km이며, 총 21개소의 경계초소(사진 Ⅲ-17)가 식별된다. 16호 관리소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3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미국 북한인권위원회는 16호 수감자들이 풍계리 핵시설 노동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⁶⁴

64 HRNK, *Switchback: Evidence of a Connection between Kwan-li-so No. 16 and the Punggye-ri Nuclear Test Facility?*, 2023.10.17.



<사진 III-16> 16호 관리소 전체

	수감주택		관리자주택
	노역시설		경비부대

* 16호 경계 역시 철조망을 중심으로 표시하였다. 다만, 아람천 발전소를 간결하면서 인근의 철조망을 해제하였으나, 이후 철조망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65 해당 부분의 경계는 미완성 상태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촬영일 | 2024. 5. 2.

<사진 III-17> 16호 관리소 경계·경비부대 위치





MAXAR

촬영일 | 2024. 12. 7.

41:18:37N, 129:20:44E

<사진 III-18> 16호 관리소 경비부대 본부



<사진 III-19> 16호 관리스 경비부대 중·대대급 시설

MAXAR

촬영일 | 2024. 12. 7.
41:14.51N, 129:20:52E



<사진 III-20> 16호 관리소 경계철조망

MAXAR

촬영일 | 2024. 12. 7.
41:13:58N, 129:18:17E



MAXAR

촬영일 | 2024. 12. 7

41°18.51'N, 129°20'33"E

<사진 III-21> 16호 관리스 관리복부

관리본부와 함께 관리자 마을이 식별되며, 관리자 마을의 주택 형태가 두 가지로 식별된다(사진 Ⅲ-22, Ⅲ-23 참조). 다른 지역의 수감자 주택과 유사한 주택과 관리자 주택이 혼재되어 식별되고 있다. 인근에 교육 및 보육시설이 위치하고 있다(사진 Ⅲ-26 참조). 16호 관리소도 14호 관리소와 동일하게 국가보위성 관할이다.

NK Watch의 안명철 대표에 따르면, <사진 Ⅲ-22>의 좌측 주택(초록색 표시 부분)은 기존부터 있었고, 우측(노란색 표시 부분)의 주택은 2012년경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22호(회령) 관리소를 폐쇄하고 이곳의 관리자들은 16호에 이동, 배치시키면서 부족한 숙소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15호(요덕) 관리소가 폐쇄되면서 15호 관리자 중 일부도 16호 관리소도 이동, 배치되었다.⁶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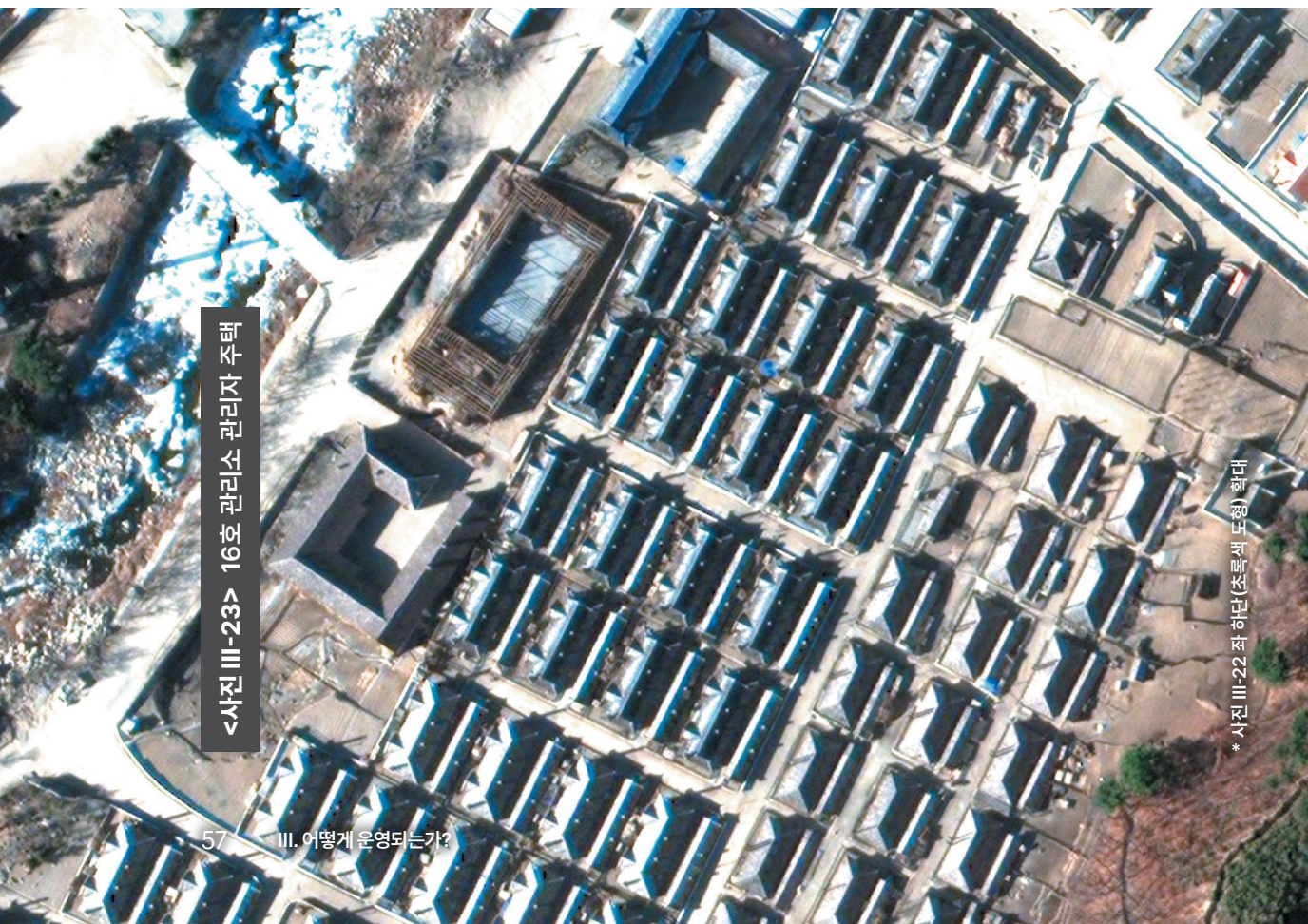
66 NKHR202500001-1 2025-06-10.



MAXAR

촬영일 | 2024. 12. 7.
41°18'52N, 129°20'42E

<사진 III-22> 16호 관리소 관리자 마을



<사진 III-23> 16호 관리소 관리자 주택

* 사진 III-22 좌 하단(쫄록색 도형)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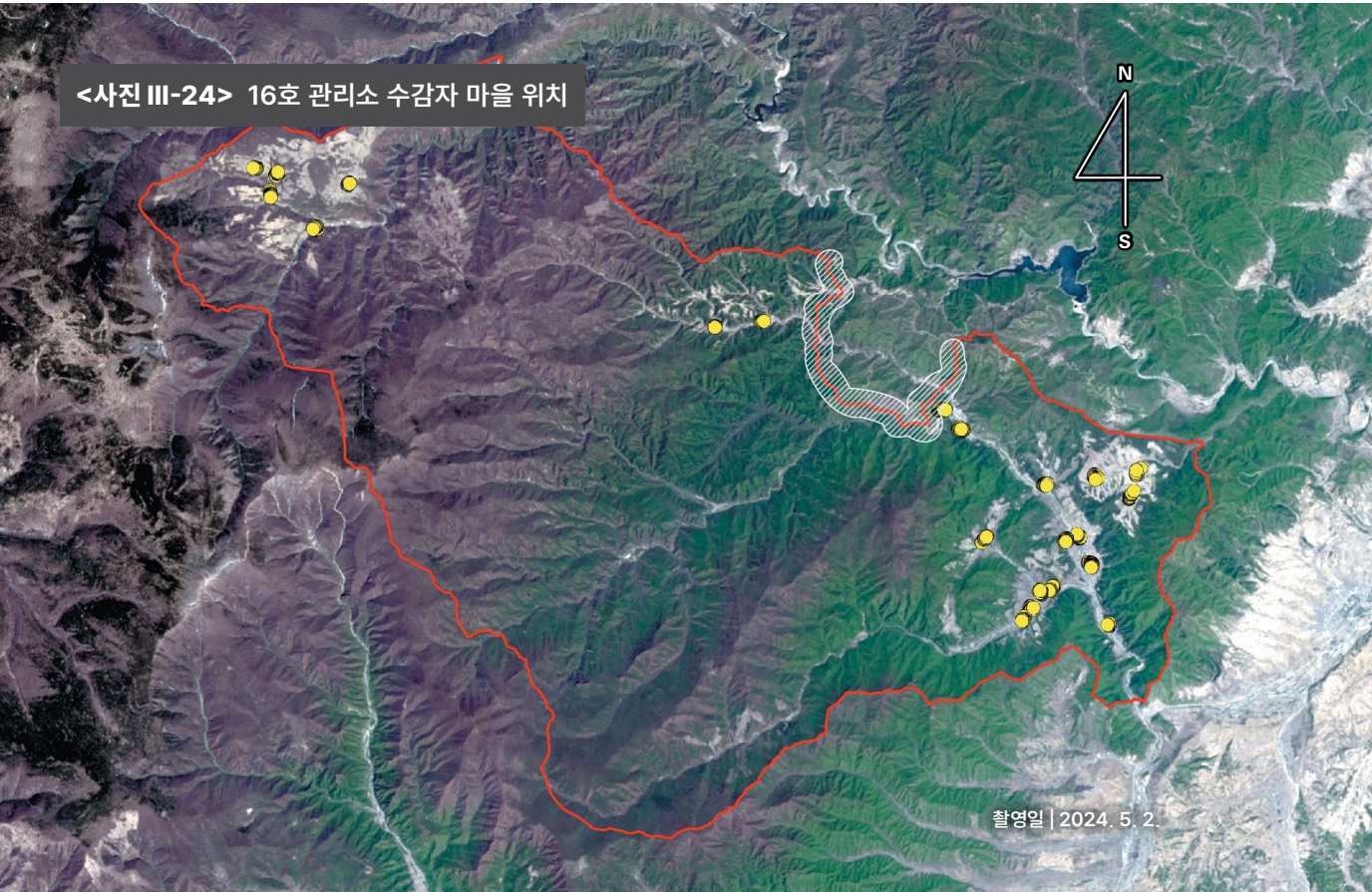
MAXAR

촬영일 | 2024. 12. 7.

41°18'56N, 129°20'43E

* 사진 III-22 우 하단(노란색 도형) 확대

수감자 주택은 <사진 III-24>에서와 같이 주로 골짜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총 428채가 식별되며 1채당 면적은 144㎡이다. 14호 관리소와 유사하게 수감자 거주 주택은 주택 1채와 창고 1개 동이 병행하여 배치되어 있으며(사진 III-25), 주택 주위로 탈곡장 등 공동작업 시설이 식별되고 있다.





<사진 III-25> 16호 관리소 수감자 마을 예시



MAXAR
촬영일 | 2024. 12. 7.
41:17:44N, 129:22:37E



MAXAR

촬영일 | 2024. 12. 7.
41:18:57N, 129:20:34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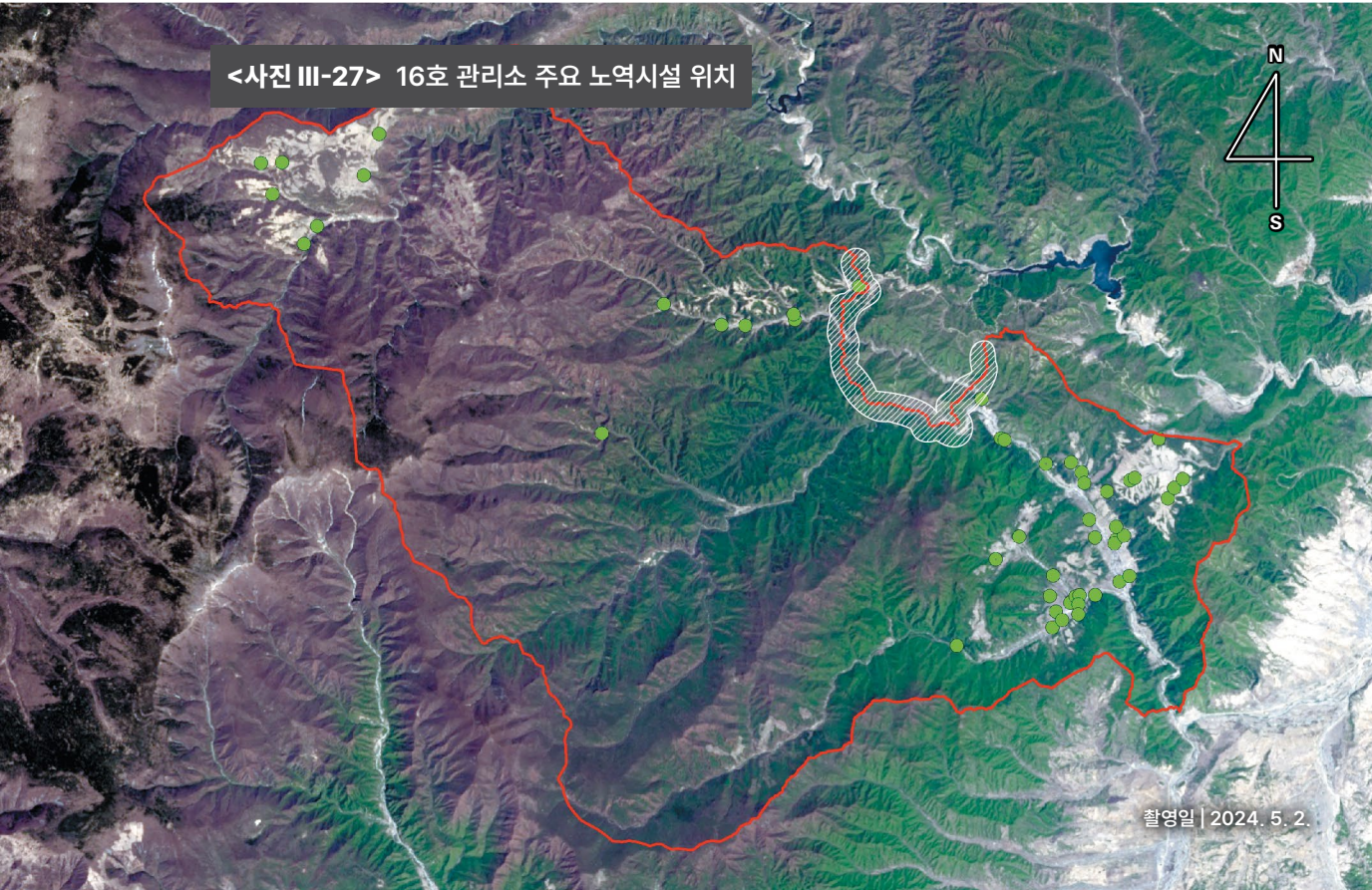


<사진 III-26> 16호 관리소 교육(좌)·보육시설(우)

MAXAR

촬영일 | 2024. 12. 7.
41:19:05N, 129:20:30E

16호 내 주요 노역시설은 과수원 2개, 광산 1개, 양어장 7개, 축사 37개, 산업시설 2개소 등 총 49개소에 이르고 있다(사진 Ⅲ-27 ~ Ⅲ-32 참조).





MAXAR

촬영일 | 2024. 7. 19.
41:17.00N, 129:23.29E

<사진 III-28> 16호 관리스 과수원



MAXAR

촬영일 | 2024. 12. 7.
41:18:04N, 129:22:33E

<사진 III-29> 16호 관리스 광산시설



<사진 III-30> 16호 관리소 미상 산업시설

MAXAR

촬영일 | 2024. 12. 7.

41:15:49N, 129:22:35E



MAXAR

촬영일 | 2024. 12. 7.
41:23:51N, 129:06:31E

<사진 III-31> 16호 관리소 축사시설



MAXAR

촬영일 | 2024. 12. 7.
41°18'31"N, 129°24'30"E

<사진 III-32> 16호 관리소 양어장

다. 18호 관리소

18호(개천) 관리소는 사회안전성이 관할하며, 1958년 주민등록 요해사업으로 북한체제에 위협이 될 만한 토대(성분)의 가족 구성원들을 집단으로 수용하였다. 1970년대에는 북창군 득장노동자구와 봉창리 일대의 탄광 개발을 목적으로 2,000여 세대를 이주시켰으며, 1982년에는 17호 관리소(함남 덕성군) 수감자를 대거 이주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1997년경 ‘심화조 사건’ 관련자가 대규모로 수감되었으며, 2001년에는 관련 사건이 해명되면서 이주민 1,000여 세대가 본 거주지로 복귀하였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⁶⁷ 이후 2006년 북창에 소재하던 18호 관리소가 현재 운영 중인 평남 개천 자양리로 이전하게 되었다. 18호 관리소가 북창에서 개천으로 이전한 것에 대한 증언은 다수의 해제민 출신 탈북민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본 보고서는 2019년 탈북한 18호 관리소 출신 탈북민 면담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필요시 추가 면담을 진행하였다.⁶⁸

18호 관리소의 부지면적은 15㎢로, 구 북창 18호 관리소와 비교해 대폭 축소되었다. 시설 경계철조망의 총 길이는 20.3km에 이르며, 경계부대의 시설은 관리본부 시설 1개소, 중대대급 1개소, 소대급(경계초소 포함) 15개소가 식별된다(사진 Ⅲ-34 ~ Ⅲ-37 참조). <사진 Ⅲ-33>을 기준으로 4시 방향에 14호 관리소가 있다.

67 NKHR2025000004 2025-05-08.

68 NKHR2020000042 2020-10-31; NKHR2020000048-2 2025-05-09; NKHR2025000004 2025-05-08.



18호 (개천) 관리소

Google Earth Pro, 캡처 이미지, 촬영일: 2025. 7. 14.

MAXAR

촬영일 | 2024. 12. 4.

<사진 III-33> 18호 관리소 전체

- 수감주택
- 노역시설
- 경비부대



<사진 III-34> 18호 관리소 경계·경비부대



MAXAR

촬영일 | 2024. 12. 4.
39:38:27N, 125:59:36E

<사진 III-35> 18호 관리소 관리본부



<사진 III-36> 18호 관리스 경비부대 관리본부

MAXAR

촬영일 | 2024. 12. 4.
39:37:55N, 126:00:02E



<사진 III-37> 18호 관리소 경비부대 소대급

MAXAR

촬영일 | 2024. 12. 4.
39:37:36N, 125:59:23E

18호 관리소의 경우 마을 형태의 다른 관리소(14호, 16호)와는 다르게 비정형적인 형태의 수감자 주택이 분포되어 있다(사진 Ⅲ-39). 실제 거주 경험이 있는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18호 이전 지역의 기존 주택들을 활용하였으며, 2006년 이전 당시에는 지휘성원 및 관리요원 가족들의 주택이 부족하여 새마을을 건설하고, 2009년 이후 가족들을 이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⁶⁹ 2006년 12월 18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상으로 관리소 운영에 핵심적인 시설들(관리본부, 자양학교, 자양병원, 이주혁명화구역, 단련대 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09년경 관리본부와 김일성·김정일 혁명역사연구소와 영생탑, 새마을 등을 건설하는 것을 목격한 증언이 수집되었다.⁷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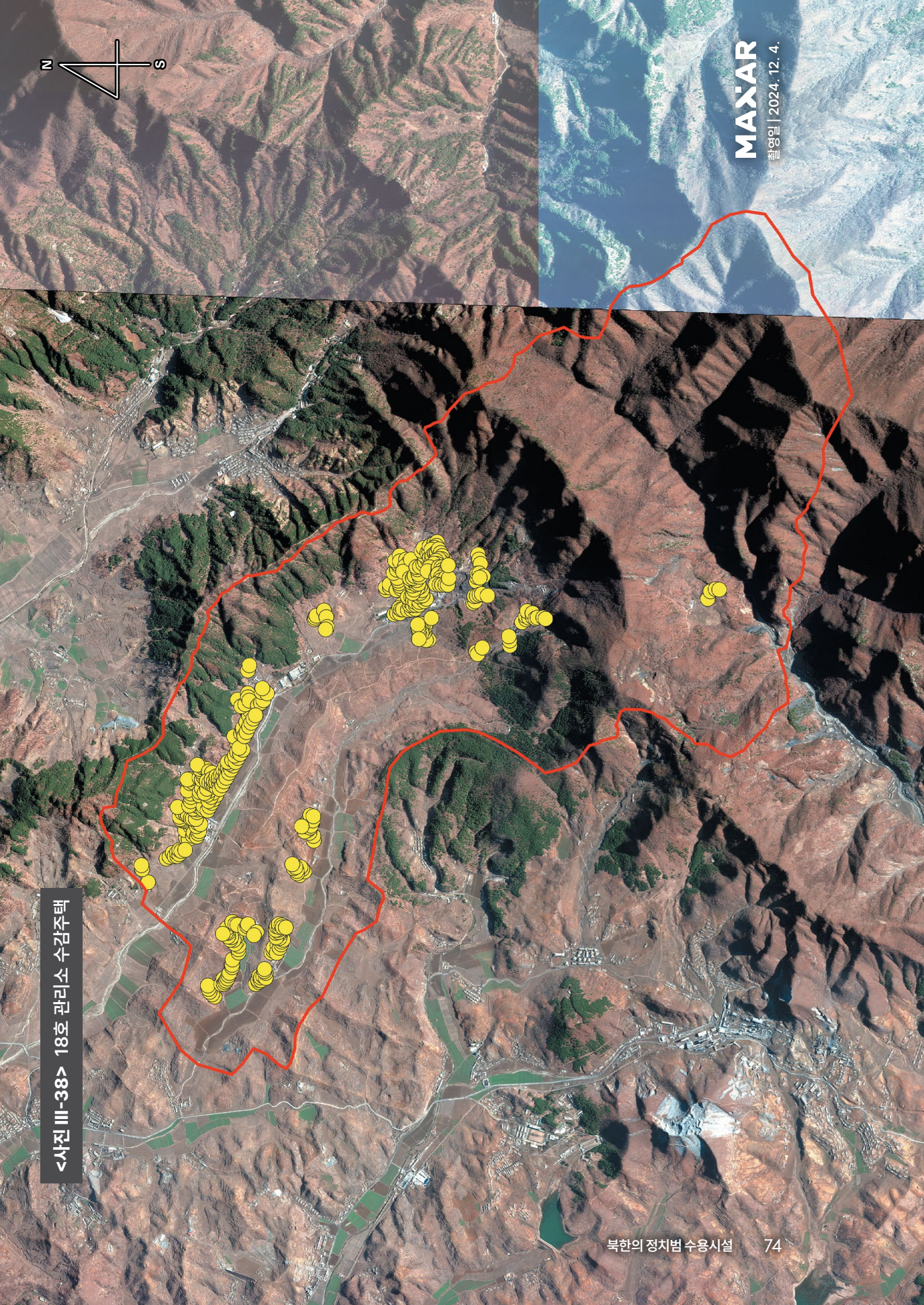
69 NKHR202000048-2 2025-05-09; NKHR2025000004 2025-05-08.

70 NKHR2025000004 2025-05-08.



MAXAR
촬영일 | 2024. 12. 4.

<사진 III-38> 18호 관리소 수감주택





MAXAR

촬영일 | 2024. 12. 4.
39:38:47N, 125:59:02E

<사진 III-39> 18호 관리소 수감자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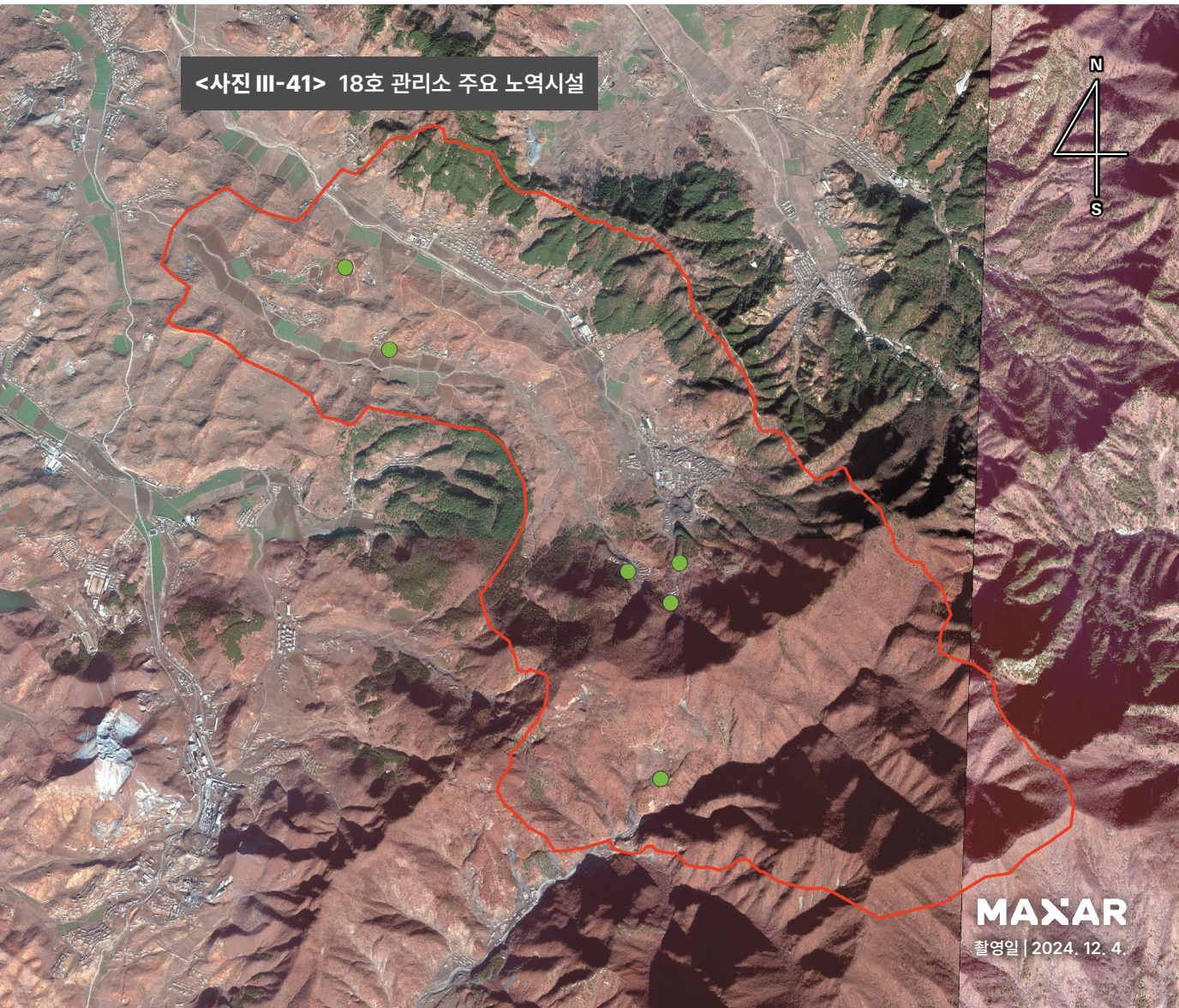


<사진 III-40> 18호 관리소 교육시설(자양학교)

MAXAR

촬영일 | 2024. 12. 4.
39:38:06N, 125:59:58E

수감자의 노동을 활용한 노역시설은 과수원 2개, 탄광 3개, 축사 1개소 등 총 6개소가 있다 (사진 Ⅲ-41~Ⅲ-44 참조). 18호 광산은 석탄만 생산되는 탄광이다. 이 외에도 18호 관리본부(사진 Ⅲ-35)와 자양학교(사진 Ⅲ-40), 자양병원, 노동단련대(사진 Ⅲ-45)가 위치하고 있다.





<사진 III-42> 18호 관리스 과수원

MAXAR

촬영일 | 2024. 6. 30.
39:38:36N, 125:58:29E



MAXAR

촬영일 | 2024. 12. 4.
39:37:35N, 126:00:05E

<사진 III-43> 18호 관리스 탄광시설



<사진 III-44> 18호 관리소 축사시설

MAXAR

촬영일 | 2024. 12. 4.
39:38:20N, 125:58:42E



MAXAR

촬영일 | 2024. 6. 29.
39°38'12N, 125°59'24E

<사진 III-45> 18호 관리소 노동단련대

18호 관리소 내 5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이주혁명화구역에는 철조망이 둘러져 있으며, 자양학교나 자양병원은 일반구역에 위치해 있다(부록의 18호 관리소 시설현황도 참조). 따라서 이주혁명화구역에 거주하는 이주민 자녀들은 관리 성원의 인솔 하에 자양학교에 등교하여 해제민, 일반민, 관리성원 자녀들과 동일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주민 자녀는 중학교 졸업 이후 주로 탄광에 배치되며, 해제민 자녀는 군 입대 및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 18호 관리소의 인구 규모는 일반 리 지역과 군급의 중간 정도이나, 중앙의 사회안전성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대학추천권 상으로 군급으로 취급되어 오히려 유리하였다는 증언도 있다.⁷¹ 자양병원에는 18호(구 북창)에서 근무하던 의료진 20여 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진료 및 치료에 필요한 약품 등을 포함 완전 무상의료제가 유지된 것으로 파악된다.⁷²

이주혁명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하였고, 저장매체도 등록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관리본부 청사 등에서 외부 지역으로 유선전화 사용이 가능하였고,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18호 관리소의 경우 다른 관리소와 달리 공민증이 부여되며, 주소는 ‘사회안전성 18호 관리소’로 기입하고 이주민과 해제민의 차이는 이주민은 혈액형을 검정색으로 표기하며, 해제민은 혈액형을 빨간색으로 표기한다.⁷³ 2006년 이전부터 18호(개천) 관리소 구역에서 거주하던 일반 주민들의 경우에는 공민증 주소를 행정구역명으로 표기한다. 18호 관리소 주민은 모두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피선거권은 관리성원에게만 주어진다. 18호 관리소는 독립적인 사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범죄 발생 시 수사-예심-재판을 거치게 된다. 18호 관리소 내에는 ‘노동단련대’ 등 구금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 III-45>는 노동단련대 수감자들의 숙소동이며, 수감된 사람들은 주변에 조성된 농지나 작업장에서 장시간의 육체노동을 수행한다.

북한의 『주민등록사업참고서』는 주민등록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요해를 실시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위부 아래 이주민 관리소의 이주민”을 ‘요해하지 않는 대상’으로 설정해 두고 있다. 관리소 이주민의 경우 공민증이 부여 또는 유지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위의 사회안전성 관할의 18호 관리소를 제외하고는 공민증이 박탈된다는 증언이 있었으나,⁷⁴ 그 실제 사례는 수집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북한 문건을 비추어 볼 때

71 NKHR2020000048-2 2025-05-09; NKHR2025000004 2025-05-08.

72 NKHR2020000048-2 2025-05-09; NKHR2025000004 2025-05-08.

73 NKHR2020000048-2 2025-05-09; NKHR2025000004 2025-05-08.

74 NKHR2025000001 2025-0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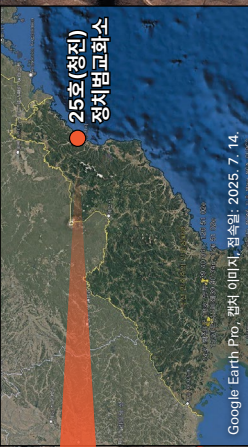
14호와 16호의 경우 “국가안전보위부 아래 이주민관리소의 이주민”에 해당되므로 이들은 공민증이 박탈되거나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⁷⁵

라. 25호 정치범교화소

25호(청진) 정치범교화소는 함북 청진시 수성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형태의 대규모 시설인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교화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부지 면적은 0.9㎢로, <사진 Ⅲ-46>에서와 같이 경비초소(감시탑) 44개, 수감건물 2개 동, 노역시설(과수원 2, 광산 1, 축사 1, 양어장 1, 다수의 산업시설)이 식별된다. 시설의 경계 철조망은 약 5km에 이르고 있다. 감시초소는 경계철조망뿐만 아니라 정치범교화소 내부 노역시설 등에도 배치되어 있다.

75 또한 세대주로 있던 사람이 교화소, 교양소, 이주민관리소에 들어가 있으나 앞으로 나와서도 세대주로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를 바꿔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안전부출판사, 『주민등록사업참고서』, pp. 7~11.



MAXAR
촬영일 | 2024. 12. 4.

<사진 III-46> 25호 전체

	수감동		노역시설		경비부대
--	-----	--	------	--	------

* 표시한 11시 방향의 건물은 경비대 본부로 1개 중대이며, 그 오른쪽에 위치한 건물은 경공업 공장으로 파악된다. 빨간색 경계표시 밖에 위치해 있으나, 모두 25호 소속이다.

<사진 III-47> 25호 경비시설



*확대사진은 감시탑이다.



MAXAR

촬영일 | 2024. 11. 18.
41.49.59N, 129.43.45E

<사진 III-48> 25호 관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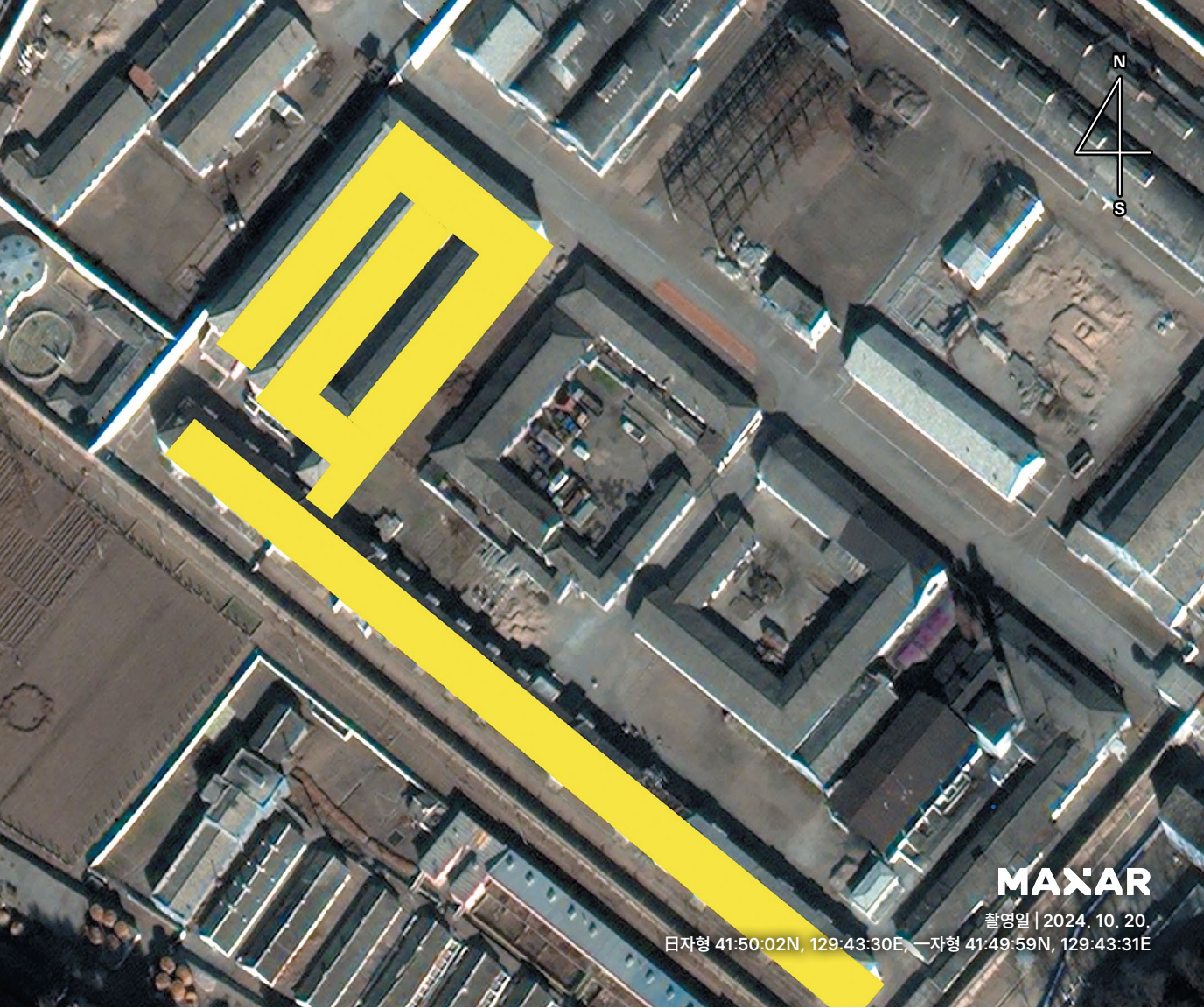
<사진 Ⅲ-49>에서와 같이 수감동은 일자형의 2층 건물과 一자형 3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15,000㎡로 5,813명을 수감할 수 있는 규모이다.⁷⁶

25호 내 실태에 대한 탈북민 증언은 수집되지 못하였다. 다만 가족 및 지인들의 수감 상황에 대한 일부 증언을 통해, 특정 형기를 받고 수감되며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외부에 관리소 실태를 발설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석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76 헌법재판소는 2013헌마142 결정에서 당시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0.3평) 남짓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0.78평)이 확보돼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7㎡를 최소 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사진 III-49> 25호 수감동





MAXAR

촬영일 | 2024. 10. 20.

일자형 41:50:02N, 129:43:30E, —자형 41:49:59N, 129:43:31E



MAXAR

촬영일 | 2024. 10. 20.
41°50'03N, 129°43'38E

<사진 III-50> 25호 주요 산업시설



MAXAR

촬영일 | 2024. 10. 20.
41:50:01N, 129:43:45E

<사진 III-51> 25호 양어장



MAXAR

촬영일 | 2024. 10. 20.
41:49:56N, 129:43:30E

<사진 III-52> 25호 측사시설

2. 폐쇄된 관리소

15호(요덕) 관리소는 국가보위성 관할의 관리소로,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수의 탈북민 증언을 통해 15호 관리소 실태가 국제사회에 알려져 왔다. 15호 관리소는 함경남도 요덕군 입양리·임평리·평전리·대숙리 일대에 위치하였으며, 총 부지면적이 363km²에 이르렀던 것으로 파악된다. 위성사진 분석 및 관련 단체의 보고서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 등으로 15호 관리소가 2019년경 해체(폐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⁷⁷

<사진 Ⅲ-53>과 <사진 Ⅲ-5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감자 마을 일부는 전량 철거되고 일반 농촌주택이 신축된 것으로 파악된다.⁷⁸

관리자 마을의 경우 2017년 12월 5일 촬영된 위성사진(사진 Ⅲ-55)에는 시설 입구에 문주, 경비초소, 바리게이트 등 경비시설이 식별되나, <사진 Ⅲ-56>에서 보듯이 관리자 마을 주택은 큰 변화가 없으나, 문주, 경비초소, 바리게이트 등이 철거된 것으로 나타난다.

77 NK Watch 안명철 대표 면담, NKHR202500001-1 2025-06-10.

78 단순 철거에서 지나지 않고 전소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기존의 15호 관리소 내 수감자 마을의 위생시설이 열악하여 전소 후 2021년경 농촌의 일반 주택인 '새살림' 주택 형태로 신축한 것으로 보인다.



MAXAR

촬영일 | 2017. 12. 5.
39:41:24N, 126:50:37E

<사진 III-53> 15호 관리소 해체 전(前) 수감자 마을



<사진 III-54> 15호 관리소 해체 후(後) 일반 농촌주택 신축

MAX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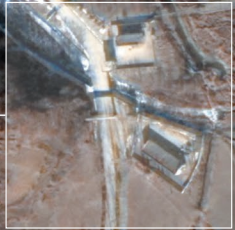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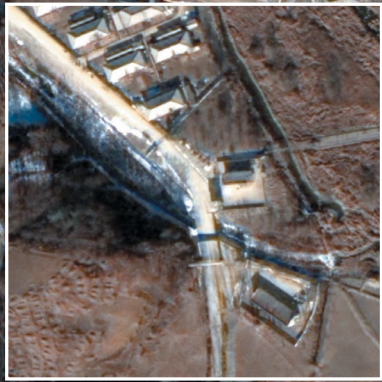
촬영일 | 2024. 12. 26.
39°41'59N, 126°51'56E



MAXAR

촬영일 | 2017. 12. 5.
39°40'28N, 126°51'05E

<사진 III-55> 15호 관리소 해체 전(前) 관리자 마을





<사진 III-56> 15호 관리소 해체 후 (後) 관리자 마을



3. 수감규모

북한 관리소 내 수감규모는 형태에 따라 수감자 주택과 수감동의 수용 능력을 토대로 추정하였다. 마을 형태인 14호, 16호, 18호 관리소 경우 수감자 주택은 땅집 형태의 공동주택이며, 25호 경우에는 교화소 형태의 수감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감안하여 수용 능력 추정 시 마을 형태의 공동 주택의 경우 1세대 20㎡를 기준으로,⁷⁹ 세대원 수를 4명(5㎡) 혹은 5명(4㎡)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25호는 교화소 형태라는 점에서 수감자 1인당 최소면적(2.58㎡)을 기준으로 수용규모를 추정하였다. 14호 관리소의 경우 마을에 울타리가 식별되는 수감자 주택을 중심으로 수감주택 면적을 계산하였다. 반면에 18호 경우에는 위성사진 상으로 전형적인 이주민마을과 관리자 주거구역을 식별하기 어려웠다. 다만 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2006년 관리소 이전 후에 건설된 관리성원 주택(새마을)을 제외한 주택 면적을 수감주택 규모로 산정하였다. 이주혁명화구역 및 탄광마을 위쪽의 이주민마을 등에 이주민이 주로 거주하며, 해제민과 일반민 세대가 다수 거주하였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그러나 전체 세대에서 이주민과 해제민 및 일반 주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전체를 포함하여 수감주택 면적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18호 관리소의 실제 수용규모는 추정치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2014년을 기준으로 15호를 포함한 5개 관리소의 수감주택 총 연면적은 371,036㎡이다. 15호 관리소 폐쇄 및 3개 관리소(25호 제외)의 수감주택 연면적 감소로 인해 2024년 기준 수감주택 및 수감동의 총 연면적은 254,580㎡이다. 전체 관리소의 수감 능력을 감안하여 최소 54,000여 명에서 최대 66,000여 명의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3년 보고서의 80,000~120,000명보다 현저히 감소한 수치이다. 2013년 추정치 발표 이후, 폐쇄된 요덕의 15호 관리소의 규모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15호 관리소의 폐쇄가 수감자 전원 석방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나, 18호 관리소 이전 시 대규모 해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상당한 규모가 해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전체 관리소 내 새로운 이주민 유입 축소 및 기존 수감자의 사망 등을 감안할 수 있다. 2013년 보고서의 경우 마을 형태와 교화소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이번에는 마을 형태의 관리소인 14호, 16호, 18호와 교화소 형태인 25호의 수용규모 추정 기준을 달리하여 전체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전체 수감규모가 80,000~120,000명에서 54,000~66,000명으로 축소된 것은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 의지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라 보기는 어렵다.

79 NKHR2020000048-2 2025-05-09; NKHR2025000004 2025-05-08. 북한의 농촌 땅집(일명 하모니카 주택으로, 일자형 공동주택)은 약 10~12평 정도이며, 마을 형태의 관리소 수감자 주택의 경우 이보다 조금 더 열악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1> 전체 추정 수용규모

관리소 구분	2024년 수감주택 면적	최소 수용규모(명)	최대 수용규모(명)
14호(개천)	1,020채 총 연면적 141,600㎡	28,320	35,400
16호(명간)	428채 총 연면적 61,500㎡	12,300	15,375
18호(개천)	380채 총 연면적 36,480㎡	7,296	9,120
25호(청진)	2채 총 연면적 15,000㎡	5,813	5,813
총계	254,580㎡	53,729명	65,708명

IV. 국제사회는 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는가?

1. '인도에 반한 죄'의 핵심 근거	102
2. 유엔의 지속적인 우려 표명	103
3. 개별국가의 우려와 관심 표명	106
4. 대북 인권제재의 핵심 사유	109
5. 뮤지컬 및 영화를 통한 관심 제고	111

IV. 국제사회는 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는가?

1. ‘인도에 반한 죄’의 핵심 근거

북한인권결의 등 북한인권 관련 유엔문서에서 보듯이 북한 내 인권실태에 대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평가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을 비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를 지속적으로 채택하고 있음에도 북한 당국은 거부 및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왔다.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개선전략 전환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면서 국제사회는 북한 내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핵심 요인에 대해 북한 내 ‘비처벌’(impunity) 관행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북한인권결의(A/HRC/22/L.19)를 통해 북한 내 대규모 인권침해 행위가 국제법적인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구성하는 지 판단하도록 ‘온전한 책임규명’(full accountability) 임무 수행의 목적으로 ‘조사위원회’(COI)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COI는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A/HRC/25/63)를 2014년 2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조사위원회는 북한 내 대규모 인권침해가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로의 강제실종은 북한 주민이 정권에 복종하도록 공포심을 주는 최종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치범수용소 내에서의 인권유린이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하는 핵심 근거라고 명시하였다.⁸⁰

COI는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된 비인도적 행위들이 상당한 규모와 상당한 정도의 조직을 통해 범해지고 있어 그 자체가 정부 정책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systematic and widespread attack)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정치범수용소 수용자를 포함한 북한의 정치체제와 지도부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당국의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공격의 일부로 인도에 반한 죄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80 본 보고서에서 기존의 정치범수용소를 관리소(정치범교화소 포함)로 칭하기로 하였으나, 국제사회의 권고를 다루는 IV~V장에서는 기존의 용어인 ‘정치범수용소’라고 하였다.

“조사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정치범수용소에서
 멸절, 살해,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및 기타 중대한 성폭력
 그리고 정치적·종교적 및 성차별적 이유에 근거한 박해를 포함하여
 인도에 반한 죄를 범했고 현재도 범하고 있다고 본다.”

UN Doc. A/HRC/25/CRP.1 (7 February 2014), para. 1033, p. 322.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COI는 북한 당국이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을 즉각 허용하며,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을 즉각 석방하라고 권고하였다. 또한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침해를 포함하는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하는 대규모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형사처벌과 제재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였다.

2. 유엔의 지속적인 우려 표명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전신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 사무총장 및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 상황보고서, 인권최고대표 등 많은 유엔 기구들이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여 오고 있다.

가. ‘북한인권결의’

유엔 인권위원회 소위원회(1997년~1998년), 인권위원회(2003년~2005년), 인권이사회(2008년~현재), 총회(2005년~현재)는 지속적으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였다.

유엔 인권위원회 소위원회는 1998년 북한인권결의(E/CN.4/Sub.2/1998/L.7)에서 수많은 정치범이 북한 내에 수용되어 있고 그중 많은 정치범이 부당한 처우로 심각한 고통을 당하며, 병, 기아 등으로 사망한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 총회에서는 정치범수용소의 존재와 강제노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을 지체 없이 무조건 석방하라고 촉구하였다. 특히 2014년 COI 보고서 발표 이후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가 멸절, 노예화 등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한다는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여 오고 있다.

<표 IV-1> 유엔 북한인권결의 중 정치범수용소 관련 주요 내용

인권위원회 소위원회(199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범의 수용과 정치범에 대한 부당한 처우, 병·기아 등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우려 표명
인권위원회(2003년~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정치범수용소의 존재와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 표명
인권이사회(2008년~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내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 인권침해, 특히 정치범 및 송환된 주민에 대한 고문 및 노동수용소 수용에 대한 개탄 • 정치범수용소 및 일반 감옥에서 멸절, 노예화 등 인권침해의 만연 • 모든 정치범수용소의 해체 및 모든 정치범의 석방 • 사법개혁을 통한 공정한 재판 및 적법한 절차를 통한 보호 제공 • 공개처형 포함, 자의적·약식 처형 관행의 중단 • 연좌제 처벌의 관행 폐지
총회(2005년~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다수의 정치범수용소의 존재와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 표명 • 자유의 박탈, 강제노동을 포함한 충격적 인권침해 관행의 즉각 중단 • 정치범수용소의 즉각 폐지 및 모든 정치범의 지체 없는 석방

나. 「북한인권상황 보고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 유엔 사무총장은 총회에 매년 북한인권 상황과 권고를 담은 「북한인권상황 보고서」(Report of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를 제출하고 있다. 특별보고관과 사무총장은 북한인권상황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정치범수용소의 해체와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하여 오고 있다. 특히 2013년 2월 마르주끼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A/HRC/22/57) ‘부록 I의 D’에서 ‘정치범수용소(prison camps)’를 별도의 소절로 기술하고 있다. 특별보고관과 사무총장이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범수용소의 존재와 강제노동, 공개 및 비밀처형의 주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둘째, 2010년 3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6개 정치범수용소의 상황에 관한 서신을 북한정부에 발송하였다. 셋째, 위성 이미지를 활용한 정치범수용소 실상을 알리는 인권 NGO의 활동에 주목하였다. 넷째, 요덕수용소 등 정치범수용소 수용 과정에서의 연좌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다섯째,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모든 정치범수용소(관리소)를 해체할 것을 권고하였다(A/HRC/22/57; A/79/277 등).

다. 「북한 내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

COI가 2014년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인권이사회는 2016년 3월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 따라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모색할 ‘책임규명에 관한 독립전문가 그

룹(the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을 임명하였다. 2명의 독립전문가는 2017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결과보고서(A/HRC/34/66/Add.1)를 제출하였다. 그 후속 조치로 인권최고대표는 2019년, 2021년, 2023년, 2025년 등 일련의 ‘북한 내 책임규명 증진’(Promoting accountability in the DPRK)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인권최고대표의 보고서는 책임규명 이행을 위해 수행한 활동, 특히 책임규명 전담팀(dedicated accountability team)의 설립과 이후 수행한 업무에 초점을 두고 성과를 담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에서 인권최고대표는 북한 내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책임규명 증진을 위한 핵심 인권침해 요인으로 정치범수용소를 기술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법적 테두리 밖에서 철저히 비밀리에 운영되는 시설이며, 강제송환된 탈북자 중 기독교 단체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연락 및 한국 기도 등 정치범죄로 분류되는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되면 국가보위성에 의해 계속 구금되며 일부는 관리소에 수용된다.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인도에 반한 죄가 만연해 있다는 COI의 조사결과를 감안하여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해당 구금시설에 대한 신뢰할 만한 최신 정보의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기록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다(A/HRC/40/36; A/HRC/58/61).

라.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신숙자, 오혜원, 오규원 사건’에 대한 견해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별(country-specific) 절차, 주제별(thematic) 절차 등 두 가지 종류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절차는 주제별 혹은 국별 관점에서 인권을 보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 인권전문가이다. 2024년 11월 현재 46개의 주제별 절차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은 2012년 4월 30일~5월 4일 제63차 회기에서 신숙자, 오혜원, 오규원 사건에 관한 견해(Opinions adopted by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at its sixty-fifth session, A/HRC/WGAD/2012/4)를 채택하였다.

1985년 서독에서 경제수리학을 전공한 오길남 박사는 아내 신숙자와 두 딸 오혜원, 오규원을 데리고 월북하였다. 1986년 서독 유학생 2명을 유인하라는 지령을 받은 오길남은 덴마크에서 홀로 탈북한 이후 가족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2년 3월 1일 실무그룹은 북한에 보낸 통보(communication)에서 오길남의 처 신숙자와 두 딸 오혜원, 오규원이 처음 요덕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었다는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이후 대석리로 불리는 평양 인근의 수용소로 이감되었는데, 1990년대 초반 이후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실무그룹의 통보에 대해 2012년 4월 27일 답변에서 북한 당국은 신숙자 씨가 지병인 간염으로 사망하였으며, 이 사건은 자의적 구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실무그룹은 1987년 이후 북한

당국이 신숙자 씨와 두 딸을 자의적으로 구금하였으며,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즉각적인 석방과 배상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 당국에 요구하였다.

마. 「북한에 의한 강제노동」 보고서: 관리소 내 강제노동과 노예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는 2024년 7월 24일 「북한에 의한 강제노동」(Forced Labour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라는 주제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강제노동과 노예화의 관점에서 정치범수용소(관리소) 내 인권유린 실태를 조명하고 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소에 수용된 정치범들의 삶은 강제노동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개탄하며, 북한 내 관리소 등에서 인도에 반한 죄로서의 노예화가 자행되었고,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불만을 합당한 근거가 존재한다는 2014년 COI 보고서의 결론에 주목하였다.

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사전 질의서'를 통한 관리소에 대한 답변 요청

북한은 자유권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대표단을 파견하여 심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 그런데 북한은 2000년 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아직까지 3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북한이 장기간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2021년 사전 질의서(List of issues prior to the submission of the third periodic report of the DPRK, CCPR/C/PRK/QPR/3)를 북한에 발송하였다. 위원회는 동 질의서에서 북한 당국에 대해 자유와 안전 및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의 처우(자유권규약 제9조~제10조)를 근거로 많은 개인들이 재판 없이 혹은 불공정한 재판의 결과로써 통상적인 감옥과 정치범수용소에서 장기 구류 판결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청하였다.

3. 개별국가의 우려와 관심 표명

가. 미 국무부

미 국무부는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북한인권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North Korea)에서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이 운영 중인 정치범수용소(관리소)는 6개이며, 일반적으로 8~12만 명으로 추정하지만 일부 NGO의 추정치는 20만 명이라는 등 그 수용규모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관리소 내 강제노동

문제를 특별히 언급하면서 정치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주민을 국가보위성이 체포하여 재판 없이 관리소에 수감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2017년 위치, 면적, 수용인원 등 6개 관리소별 실태를 담은 *Prisons of North Korea (Fact Sheet)*를 발간하였다.⁸¹

2021년 4월 28일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즈음하여 북한인권에 대한 공식 논평(On the Occasion of North Korea Freedom Week)을 발표하였다. 동 논평을 통해 정치범수용소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인권유린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10만 명 이상의 정치범을 포함하여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권에 의해 존엄과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편에 서겠다고 강조하였다.

나. 북한인권 관련 청문회를 통한 미 의회의 우려 표명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는 2008년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초당적 하원 기구이다.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일련의 청문회(2010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21년)를 개최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2년 9월 19일 ‘북한: 변화의 시기 지속적인 인권침해’(North Korea: Ongo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an Era of Change)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동 청문회는 김정은 정권 출범 후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유린을 포함하여 북한 내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동 청문회에서 수전 솔티 디펜스포럼 회장, 탈북민 출신 박광일 북한민주화 청년학생포럼 본부장, 요덕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민 안혁 등 3명이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안혁은 동 청문회에서 1986년 1월 요덕 정치범수용소에 터무니 없는 이유로 수용되어 3년간 혁명화 구역에서 생활하였으며, 정치범수용소로부터 석방된 이후 불공정한 처우를 받으면서 남한행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다. ‘북한인권결의’를 통한 유럽의회의 지속적 관심 표명

유럽의회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일련의 결의를 채택하여 오고 있는데, 결의를 통하여 정치범수용소 내 심각한 인권 유린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정치범수용소의 해체와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81 해당 보고서는 Camp 14 Kaechon, Camp 25 Chongjin, Camp 16 Hwasong, Camp 22 Hoeryong(2012), Camp 18 Pukchang, Camp 15 Yodok의 6개소를 다루고 있다. <<https://2017-2021.state.gov/prisons-of-north-korea>> (검색일: 2025.6.9.).

<표 IV-2> 유럽의회의 북한인권결의와 관리소 관련 주요 내용

결의	내용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8 July 2010 on North Korea P7.TA(2010)02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만 명 이상의 정치범이 수용된 최소 6개의 정치범수용소 (concentration camp)를 운영한다는 주장 •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도 수용 • 정치범을 석방하도록 요구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4 May 2012 on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P7.TA(2012)0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범에 대한 노동 수용소의 운영 • 최소한 6개의 정치범수용소와 많은 노동교화소를 운영, 20만 명 이상이 수용되어 있는데 이들의 수감사유는 대부분 정치적 요인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4 March 2013 on nuclear threats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7.TA(2013)00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만 명 이상이 정치범수용소와 혁명화 수용소 (re-education)에 수감 • 정치범 석방 요구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7 April 2014 on the situation in North Korea(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7.TA(2014)04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십만 명에 이르는 과거 및 현재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에게 자행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잔혹 행위'가 '20세기 전체주의 국가가 설립한 수용소의 참상'을 연상시킨다는 COI 보고서의 결론을 언급 •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폐쇄와 정치범 석방 요구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1 January 2016 on North Korea P8.TA(2016)0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범 석방 요구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7 April 2022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ncluding the persecution of religious minorities P9.TA(2022)0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금시설과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강제 중노동에 대한 우려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면 관리소(정치범수용소)가 작동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통제와 억압에 필수적이라고 언급 • 북한 당국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적이고 조직적으로 많은 주민, 특히 관리소에 수용된 정치범으로부터의 강제노동을 필요 • 북한 당국에 관리소 체계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인도에 반한 죄를 중단할 것 촉구 • 관리소 해체 필요성 강조 •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공표와 독립적인 국제감시 기구에 방문할 기회를 제공할 것 요구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8 November 2024 on reinforcing EU's unwavering support to Ukraine against Russia's war of aggression and the increas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P10.TA(2024)00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상황, 강제실종, 피구금자의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기구의 접근 허용 요구

4. 대북 인권제재의 핵심 사유

미국, 유럽연합, 영국 등 개별국가는 독자적인 인권 제재 규정에 따라 인권 제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주요 대상국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관리소 내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가. 미국: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과 행정명령

미국은 2016년 북한만을 대상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3장은 ‘인권의 증진’(Title III Promotion of Human Rights)으로, 제303조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보고’(Sec. 303 Report on North Korean Prison Camps) 조항이며, 국무장관은 일정 사항⁸²을 담은 보고서를 관련 의회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⁸³

그리고 제304조에서 ‘북한 내 심각한 인권유린 혹은 감시와 관련한 제재의 보고 및 제재의 부과’(Sec.304 Report on and Imposition of Sanctions with respect to Serious Human Rights Abuses or Censorship in North Korea)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일련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E.O13687, E.O13722, E.O13810)을 발동하였다. 그중 E.O13687에 따라 2018년 12월 정경택 국가보위상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⁸⁴

나. 유럽연합: 「글로벌 인권제재 레짐」

2012년 미국은 러시아 정부 고위관리들의 부패를 폭로한 뒤 교도소에서 의문사한 러시아인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이름을 따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법치 책임법」(Sergeri Magnitsky Rule of Law Accountability Act)을 제정하였다. 이후 프리덤하우스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전 세계로 넓히려며 입법 로비를 벌였고, 그 결과 2016년 12월 「글로벌 마그니츠키

82 ㉠ 정치범 추정 규모, ㉡ 수용소의 지리적 좌표, ㉢ 수용사유, ㉣ 수용소의 주요 산업 및 생산물, 생산물의 최종 사용자, ㉤ 수용소 실태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 ㉥ 위성 영상을 포함한 영상

83 미 국방부 산하 국가지리정보국(NGA)은 ‘북한 정치범수용소 제25호 관리소’에 대한 분석을 공개하고 북한이 이 시설을 계속 유지하면서 감시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미 국가지리정보국 ‘북한, 청진관리소 계속 운영…수감자 강제노동 동원,’” 『미국의 소리』, 2024.2.27.

84 지정 사유는 정경택 국가보위상이 고문, 기아, 강제노동, 성폭력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권유린을 지시하는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인권책임법(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인권 탄압이나 부패에 관련된 외국인(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입국을 거부하고 미국 관할권 내 자산을 동결하며 미국인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을 모델로 「글로벌 인권제재 레짐」을 제정하였다. 동 레짐은 1) 「심각한 인권 침해 및 박해에 대한 제한조치에 관한 2020년 12월 유럽이사회 결정 2020/1999」(COUNCIL DECISION (CFSP) 2020/1999 of December 2020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2) 「심각한 인권 침해 및 박해에 대한 제한조치에 관한 2020년 12월 유럽이사회 규칙 2020/1998」(COUNCIL REGULATION (EU) 2020/1998 of December 2020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의 두 개의 입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레짐에서는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과 같이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도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재 대상자의 입국이나 체재를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글로벌 인권제재 레짐」에 근거하여 202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제재 조치를 발동하고 있다. 2021년 3월 22일에는 중국, 북한,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 6개국의 개인 11명과 4개 단체를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정경택(국가보위상), 리영길(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정경택 국가보위상에 대한 지정과 관련해 반체제 인사를 잡아내고, 체제에 위협이 되는 외부로부터의 정보의 유입, 정치체제와 지도자에 심각한 정치적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억압하는 탄압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을 이끄는 인물이라는 점을 제재 지정 사유로 명시하였다. 유럽의회는 2023년 12월 이들에 대한 제재를 2026년 12월 8일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2024년 7월 22일 리창대 국가보위상과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다. 영국: ‘글로벌 인권제재 규정’

영국은 2018년 일명 영국판 마그니츠키법인 「2018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 근거하여 2020년 7월 6일 ‘2020 글로벌 인권제재 규정(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ulations 2020)’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제재 대상자에게 입국 제한 등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 외무부는 ‘2020 글로벌 인권제재 규정’ 발효일에 첫 제재 대상으로 러시

아,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북한 등 4개 국가의 총 47명의 개인과 2개의 기관을 지정하였다. 북한은 4개 국가 중 기관이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유일한 국가로, 정치범수용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 국가보위성 7국과 교화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회안전성 교화국이 제재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5. 뮤지컬 및 영화를 통한 관심 제고

민간 영역에서 정치범수용소를 주제로 하는 뮤지컬, 영화 등이 제작되어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역할이 수행되고 있다.

가. 뮤지컬: ‘요덕스토리’

이는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인 정성산 씨가 제작한 뮤지컬로, 북한의 요덕수용소 내 인권 유린의 상황을 고발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한 15호 정치범수용소의 이야기를 다룬 ‘요덕 스토리’는 국내외 총 115회 공연을 통해 18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으며, 미국·독일·일본 등에서 전석 매진 사례를 기록하는 등 국제적 반향을 일으켰다. 문화 콘텐츠로 북한의 관리소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인권 의제의 대중적 확산에 기여했다.

줄거리

강련화라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그녀와 그녀의 평화로운 가정에 닥치는
파란만장한 삶과 죽음을 그린 이야기이다. 북한 최고의 무용수이며
왕재산경음악단 공훈 무용수인 강련화에게 어느날
“아버지가 남조선 국가정보원의 스파이”라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요덕수용소에 수감된다.
수용소에 온 날 수용소장 리명수는 련화를 겁탈하고, 련화는 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
련화는 자살을 시도하지만, 자살 자체가 당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는
북한의 사상 때문에 그녀는 독방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
명수의 아이를 임신한 련화는 그의 권유에 따라 남한으로의 탈출을 시도하고,
명수는 련화를 도와주었다는 죄명 하에 총살당한다.

나. 애니메이션 영화: ‘True North’

재일 한인 4세인 에이지 한 시미즈 감독이 2020년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북송 재일 한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수용소 내 참혹한 실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애니메이션 영화이다.

줄거리

평양에 살고 있는 아홉 살 난 소년 박요한 씨의 부모는 북송 재일 한인이다. 북한에서 당에 충성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실종된 뒤 그와 그의 어머니, 여동생은 악명 높은 북한의 잔혹한 정치범수용소로 강제로 끌려갔다. 탈출을 시도한 수용자들의 공개처형 장면에 충격을 받은 9세 소년 요한은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된다. 아버지를 원망했던 요한은 관리성원과 어울리며 수용자를 폭행하기도 하고, 이런 행동은 가족을 위협에 빠뜨리게 된다. 몇 년 후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죽음으로 절망에 빠진 후, 최악의 생활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도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재평가하기 시작한다.

‘True North’는 앤시·도쿄·내슈빌 국제영화제 등에서 초청 및 수상하며 비평적 성과를 인정 받았다. 상업적 흥행은 미미했지만 북한 관리소 실태를 시각화해 국제 인권 담론 확산에 기여한 것이다. 특히 특히 세계 초·중·고등학교와 도서관 등 교육기관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국의 교육 플랫폼 ‘인포베이스’(Infobase.com)에 수록되며 교육적 활용 가능성도 인정받았다.⁸⁵

85 『미국의 소리』, 2024.5.24.

V. UPR 권고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1. UPR 권고 내용

114

2. UPR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관심 대상

116

V. UPR 권고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1. UPR 권고 내용

북한은 유엔 인권메커니즘 중 하나로 2006년부터 시작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 2009년, 2014년, 2019년, 2024년 모두 참여하였다. 네 차례 진행된 UPR에서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전 인권 분야에 대해 총 991개 권고사항을 제시받았고, 그 가운데 정치범수용소(관리소) 및 구금시설 관련 권고사항은 59개가 이루어졌다.⁸⁶ 역대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관련으로 제기된 59개 권고사항 중 북한이 수용한 권고는 2개, 거부한 권고는 57개로 전체 권고사항 중 97%를 북한이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은 UPR에서 제기되는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관련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 UPR 1차에 2개에 불과했던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관련 권고는 UPR 2차 들어 26개로 대폭 증가했고, UPR 3차에는 14개로 줄어들었고 UPR 4차에는 17개로 소폭 증가했다.

<표 V-1>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관련 UPR 권고

(단위: 개)

	2009 1st UPR	2014 2nd UPR	2019 3rd UPR	2024 4th UPR	합계	
총 권고	167	268	262	294	991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권고	수용	0	0	0	2	2
	거부	2	26	14	15	57
	주목	0	0	0	0	0
	합계	2	26	14	17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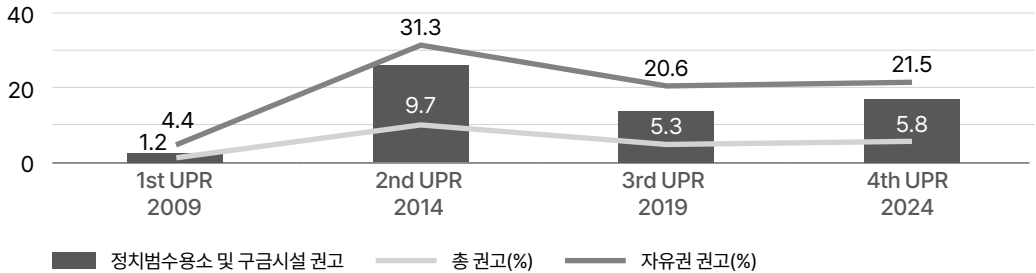
출처: 1~4차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86 수감자에 대한 강제노동 관행, 성폭력, 식량권, 국제규범 수용, 집단처벌 등에 관한 권고와 일반적인 수감자 처우에 관한 권고, 그리고 특별절차와 협력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로 분류할 수 있는 권고사항 중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관련 권고는 비중은 1차에는 4.4%, 2차에는 31.3%, 3차에는 20.6%, 4차에는 21.5%로 평균 19.5%를 차지했다. 즉 자유권 중 5개 중 1개가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에 해당하는 권고였다. 1~4차 총 권고사항에서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에 관한 권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1차 1.2%, 2차 9.7%, 3차 5.3%, 4차 5.8%로 평균 5.5%를 나타냈다.

<그림 V-1>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관련 UPR 권고 비중

(단위: %)



출처: 1~4차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제안국 측면에서 보면 1차 때는 2개국, 2차 때는 23개국, 3차에는 14개국, 4차에는 15개국에서 1개 이상의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관련 권고를 북한에 제안하였다. 네덜란드의 경우 UPR 모든 회차에서 빠짐없이 권고사항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권역별로 보면 유럽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V-2>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관련 UPR 권고 제안국

(단위: 개)

UPR Cycle	Year	제안국	제안국	권고
2009	1st UPR	네덜란드, 프랑스	2	2
2014	2nd UPR	리투아니아, 캐나다, 그리스, 체코, 슬로베니아, 대한민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미국, 독일, 이스라엘, 뉴질랜드,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일본,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구 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멕시코, 헝가리, 벨기에	23	26
2019	3rd UPR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캐나다, 미국,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체코, 아이슬란드	14	14
2024	4th UPR	조지아, 포르투갈, 감비아, 리히텐슈타인,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프랑스, 체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알바니아, 미국, 몰타, 이스라엘	15	17
합계			54	59

출처: 저자 정리.

2. UPR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관심 대상

2009년에 진행된 UPR 1차에서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관련으로는 네덜란드, 프랑스에서 2개의 권고를 제시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북한 내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접근 허용과 정치범 및 가족 구성원의 석방을 북한에 권고한 것이다. 북한 당국은 여기에 대해 모두 거부하였다. 이해관계자 의견서에서는 북한에서 정당한 재판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는 점,⁸⁷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가 관리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점,⁸⁸ 14호(개천), 15호(요덕), 16호(명간), 18호(구 북창, 현 개천), 22호(회령), 25호(청진) 관리소에 유엔과 국제비정부기구의 방문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⁸⁹ UPR 1차에서는 관리소나 교화소에 대한 권고 자체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권고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북한에 자의적 절차에 의한 인권 침해적 처벌이 북한의 구금시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환기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표 V-3> UPR 1차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권고

권고사항	제안국	북한입장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북한 내 모든 구금시설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네덜란드	최종거부
반체제인사의 모든 가족 구성원을 구금하는 관행을 종식시키고, 정치범 및 그 가족 구성원을 지체 없이 석방하며,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	프랑스	거부

출처: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UN Doc. A/HRC/13/13)"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2014년 4월에 진행된 UPR 2차에서는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권고가 26개로 1차 2개에 비해 대폭 증가했고 제안국도 23개국으로 1차 2개국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정치범수용소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UPR 2차 기간에 제출된 COI 보고서의 영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에 북한 인권에 관한 조사위원회(COI)를 설립하여 집중적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활동을 하였고 2014년 2월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북한 인권침해 상황의 광범위성과 심각성을 지적하였다.⁹⁰

COI 보고서의 중요한 결론은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국제형사법상의 인도에 반한 죄

87 UN Doc. A/HRC/WG.6/6/PRK/3 (28 August 2009), para. 20, p. 5;

88 *Ibid.*, para. 21, p. 5.

89 *Ibid.*, para. 24, p. 6.

90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 3.

(crimes against humanity)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근거로 정치범수용소에서 살해(murder), 멸절(extermiation), 노예화(enslavement), 구금(imprisonment), 고문(torture), 강간 및 성폭력(rape and other forms of sexual violence), 박해(persecution),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⁹¹

UPR 2차에서 회원국들은 정치범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정치범의 조건없는 석방을 비롯해 공정한 재판 보장, 임의구금에 대한 보호 도입,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 및 부당한 대우 금지, 수용소 및 생존한 희생자들에 대한 국제기구의 접근성 보장 등을 제시했다. UPR 1차에 비해 권고 주제가 다양해지며 내용도 구체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모든 권고를 거부하였다.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UPR이라는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북한의 구금시설 중 관리소라 불리는 정치범수용소를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소 내 수용자의 인권침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환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표 V-4> UPR 2차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권고

권고사항	제안국	북한입장
강제노동 및 배급 중지를 포함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구금자들에 대한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를 신속히 종식시킬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	리투아니아	
즉시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수감된 모든 정치범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즉시 폐쇄할 것	캐나다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	그리스	
양심수가 있는 모든 수용소를 폐쇄하고 조건 없이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	체코	
즉시 모든 정치범수용소와 노동수용소를 폐쇄하고 연좌제 수감자를 포함해서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할 것	슬로베니아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성분’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차별을 철폐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인권 메커니즘에 협조할 것	대한민국	거부
즉시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연좌제 수감자를 포함하여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	오스트리아	
국제 인도주의 기구와 인권 감시단체에 수용소와 그 희생자들에게 즉각적인 접근 기회 제공할 것		
즉시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연좌제 수감자를 포함하여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할 것	스웨덴	
포로수용소를 즉각 폐쇄할 것	스페인	
정치범수용소(관리소)를 즉각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	프랑스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즉시 철거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며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임의적 구금에 대한 보호를 도입할 것	미국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즉시 철거하고 강제노동 관행을 폐지할 것	독일	

91 보다 자세한 사항은 COI 결과보고서의 “Crimes against humanity in political prison camps”를 참고할 것. UN Doc. A/HRC/25/CRP.1 (7 February 2014) paras. 1033~1067, pp. 323~330.

권고사항	제안국	북한입장
정치범수용소를 포함하여 인권침해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고 모든 수용자를 석방할 것		
국제 인도주의 기구와 인권 감시단이 수용소와 생존한 희생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	이스라엘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하고 즉시 수용소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할 것	뉴질랜드	
“노동을 통한 교화”로 묘사된 시설을 포함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국제 인도주의 기구에게 이러한 시설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즉각적으로 제공할 것, 모든 수용소를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을 풀어 줄 것, 쉽게 추적할 수 없는 실종된 사람의 상태를 명확하게 밝힐 것	네덜란드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관행을 중단하고,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 보장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 제도의 필요한 개혁을 촉진할 것	아르헨티나	거부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는 정치범수용소를 폐지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	일본	
1차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정치범수용소 및 기타 수용소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희생자들에게 국제 인도주의 단체 및 인권 감시단이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에스토니아	
국제 인도주의 기구에게 노동수용소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즉각적이고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것	아일랜드	
국제 인도주의 기구가 수용소 및 기타 구금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구 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구금자 명부를 작성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구금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며, 임의적 체포 또는 고문에 의한 자백에 대한 모든 사례를 검토하고 피해자를 배상하는 것을 검토할 것	멕시코	
구금시설에서 고문과 학대에 대한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십자위원회와 다른 국제 관찰자가 수용자에게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구금시설에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진정한 접근을 허용할 것	헝가리	최종거부
특별보고관 및/또는 독립성을 인정받는 국제 인도주의 기구를 초청하여 교화기관 및 기타 교정시설 및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구금 조건을 평가하고 조건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해 북한이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것	벨기에	

출처: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UN Doc. A/HRC/27/10)”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2019년 5월에 진행된 UPR 3차에는 14개 회원국에서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관련 14개 권고가 제안되었다. 제안국 및 권고 수는 UPR 2차에 비해 줄어들었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체코가 2차와 3차 모두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관련 권고를 북한에 제안했고, 그 중 네덜란드는 UPR 1~3차 모두에서 관련 권고를 제안하였다. 상호대화에서 미국은 관리소의 수감자가 8만에서 12만 명에 달하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였다.⁹² 관리소 실태 측면에서 2000년대는 규모와 위치 등에서 변화가 있던 시기이다. 18호 관리소가 개천으로 이전되었고 15호(요덕) 관리소는 2000년대

92 UN Doc. A/HRC/42/10 (25 June 2019), p. 3.

초반부터 수용 규모를 일부 축소하여 2019년경에 폐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정치범수용소 권고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북한은 2019년 UPR 3차에서 제시된 14개 모든 권고에 대해 거부하였다.

권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UPR 3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치범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지 및 수감자 석방 요구와 함께 관리소 내 강제노동, 고문 비인도적 행위 중지, 국제기구 접근 허용, 자의적 구금 및 연좌제(guilt by association) 폐지, 수감자 가족 면회 허용, 구금시설 환경 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UPR 이전 권고와 차이가 있는 점은 정치범수용소 관련 인권침해를 중단해야 하는 근거로 2015년 9월 국제사회가 발전 규범으로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인권 관련 세부목표와 2014년 2월에 제출된 COI 보고서 및 권고사항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UPR 3차에서는 정치범에 대한 처벌에서 수감 대상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경우에 따라 친척까지 연계하여 처벌하는 연좌제 적용에 대한 문제가 다수 제기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표 V-5> UPR 3차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권고

권고사항	제안국	북한입장
지속가능발전목표 16에 의거하여 관리소와 그 밖의 다른 구금시설에서 수감자에게 자행되는 고문 및 학대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네덜란드	
노동수용소, 일반수용소, 관리소 등을 포함한 교정시설의 수감자에 대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제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하고, 수감자 가족 면회를 허가하고, 국제 인권기준에 맞는 수감자의 처우 관련 규칙을 제정할 것	독일	
지속가능발전목표 8.7에 준거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이 어떤 형태의 강제노동도 강요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관리소 내의 강제노동을 폐지할 것	스위스	
표현의 자유 및 공정한 절차 보장을 완전히 준수할 뿐 아니라 관리소 폐쇄를 촉구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함으로써 관리소의 자유 박탈 관행을 폐지할 것	아르헨티나	
모든 관리소를 즉시 폐쇄하고 연좌제로 수감된 친족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	오스트리아	
북한이 비준한 모든 인권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며, 자의적 구금, 관리소, 연좌제를 중단할 것	캐나다	거부
모든 관리소를 즉시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며, 자의적 구금 방지를 위해 정당한 법적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보호 제도를 시행하며, 유엔 특별절차를 포함한 국제 감시기관이 방해와 제한 없이 북한 및 모든 구금시설에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	미국	
관리소를 즉시 폐쇄하며 모든 정치범들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	룩셈부르크	
관리소를 폐쇄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뉴질랜드	
모든 관리소와 노동수용소를 폐쇄하며, '연좌제'로 수감된 친족들을 포함한 양심수 전원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	슬로베니아	
피억류자가 임의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는 모든 구금시설을 폐쇄할 것	스페인	
모든 관리소를 즉시 폐쇄하고, '연좌제'로 수감된 친족들을 포함한 양심수 전원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	스웨덴	
독립성을 갖춘 사법부를 수립하고, 모든 정치범과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수감된 수감자들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	체코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독립성을 갖춘 매체의 설립을 허가하는 등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전면 시행할 것	아이슬란드	

출처: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UN Doc. A/HRC/42/10)"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2024년 11월에 진행된 UPR 4차에서는 15개 회원국에서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관련 17개의 권고사항이 제시되었다. 권고 내용으로 보면 UPR 3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정치범수용소의 해체 및 정치범 전원 석방, 미성년자 구금 조건 개선, 식량, 깨끗한 물,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구금시설 환경 개선,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중단, 자의적 체포와 수감 중단, 연좌제 적용으로 수감 중인 가족 석방 등이 권고되었다. 미국, 네덜란드, 체코, 룩셈부르크, 스웨덴은 3차와 4차 모두 북한에 대한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관련 권고를 제시했다. 또한 조지아, 리히텐슈타인,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몰타 등이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주제로 권고하는 등 제안국이 지난 1~3차에 비해 다양해진 점도 확인된다.

UPR 4차에서 특이한 점은 북한 당국이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관련으로 수용한 권고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조지아가 제안한 ‘구금시설 환경이 인도적 처우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과 포르투갈이 제안한 ‘미성년자 구금의 적절한 조건 보장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 두 개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였다. 역대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관련 권고 중에 수용한 경우는 최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사실은 구금시설 환경과 관련된 권고사항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북한 당국이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해당 두 권고가 북한이 일관되게 거부해 왔던 관리소를 직접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거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구금시설 내 과밀 수용 및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북한이 즉시 거부하지 않았지만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거부하였다.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금지, 사형제 폐지, 자의적 체포 및 구금 주제 관련 정치범수용소 권고에 대해서는 북한은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다. UPR 4차 유엔 기관 요약보고서에서도 관리소에서 무기한 구금된 수감자들이 식량과 물,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환경을 견디고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는 실태가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⁹³ 제한적이거나 관리소 인권침해와 관련해 개선 사항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관리소에 수감된 가족의 수감 기간이 단축되었고, 아동의 경우 관리소에서 풀려나거나 수감이 면제된 사례가 있다는 보고도 제시되었다.⁹⁴

93 UN Doc. A/HRC/WG.6/47/PRK/2 (6 August 2024), para. 23, p. 3.

94 *Ibid.*, para. 24, p. 3.

<표 V-6> UPR 4차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권고

권고사항	제안국	북한입장
구금시설의 환경이 인간에 대한 인도적 처우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	조지아	수용
미성년자 구금의 적절한 조건을 보장하고, 구금 조건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	포르투갈	
과밀 수용 및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여 교도소 환경을 개선하고 수감자들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것을 보증할 것	감비아	최종거부
구금시설 내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며,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을 근거로 한 자의적 체포 및 구금을 즉시 중단하고, 구금시설 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리히텐슈타인	
구금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고문 및 학대를 중단하고 유엔 특별절차 등의 국제 감시단체에게 전 구금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할 것	우크라이나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며, 자의적 구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시행하고, 적법 절차와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보장할 것		
구금시설 등에서의 모든 종류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를 중단할 것	튀르키예	
정치적 동기에 의한 투옥 및 전 구금시설 내 고문 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것	프랑스	
정치범수용소를 폐지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며, 고문을 중단하고, 강제 실종과 자의적 및 공개적 처형을 방지할 것, 사형 집행 유예제를 도입할 것	체코	거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6에 따라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폐지하고 전 구금시설 내 고문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네덜란드	
정치범수용소를 즉시 폐지하고 모든 정치범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	룩셈부르크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즉각 폐지하고, 연좌제에 의해 구금된 친족들인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할 것	스웨덴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	알바니아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정치범을 석방하며, 공정한 재판 및 기타 보호 존중을 보장하는 자의적 구금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제정할 것	미국	
정치적 이유로 구금된 모든 수감자를 석방할 것	몰타	
인간 존엄성 및 무결성을 존중하여 강제노동수용소를 폐지하고 구금된 자유인을 석방할 것	이스라엘	

출처: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UN Doc. A/HRC/58/11)”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제기한 관리소 관련 권고에 대한 북한 당국의 세부 입장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뒤따른다. 다만 UPR 3차에서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관련 14개 권고사항은 상호대화에서 모두 수용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 현장에서 즉시 거부한 63개 권고사항 중에서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권고는 15개로, 22.2%를 차지한다. 북한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 북한은 해당 권고사항이 “적대적 세력에 조작되고 허위 정보에 기반하여 북한이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⁹⁵ UPR 4차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관련 권고사항 17개 중

95 UN Doc. A/HRC/42/10/Add.1 (28 August 2019), para. 3, p. 2.

검토과정에서 거부한 권고는 14개이다. 그 이유 또한 UPR 3차와 마찬가지로, 해당 권고사항이 조작된 허위 정보에 근거해 심각하게 왜곡되었고, 불순한 의도로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정치범수용소를 중심으로 한 인권침해 상황이 UPR 메커니즘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며 관련 권고가 북한에 제시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렇지만 관리소 내에서의 인권유린 실태가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UPR 4차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북한에서 관리소의 존재는 성분제도와 국가 감시 체계가 결합되어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단으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⁹⁶

96 UN Doc. A/HRC/WG.6/47/PRK/2 (6 August 2024), para. 46, p. 5.

VI. 결론: 어떻게 할 것인가?

VI. 결론: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에는 관리소와 정치범교화소 두 가지 형태의 정치범 수용시설이 존재한다. 관리 주체는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으로 나뉘고 있다. 또한 관리소 내에는 완전통제구역과 반(半)통제구역(혁명화구역)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북한의 정치범 수용시설과 관련하여 관리·운영체계를 일반화하여 다루어온 경향이 없지 않았다. 향후에는 관리소와 정치범교화소에 따라, 또한 관리 주체에 따라, 그리고 완전통제구역과 반(半)통제구역에 따라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25호(청진)는 관리소가 아닌 정치범교화소로 지칭하는 것이 적절하다.

인권침해를 포함한 관리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실태 파악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범 수용시설을 하나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각각의 특징과 변화 등을 포착해 나가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위성사진 분석과 탈북민 증언 및 교차 검증을 토대로 현재 운영 중인 4개 시설의 전체 수용규모를 최소 54,000여 명에서 최대 66,000여 명으로 추정하였다. 다만 18호를 제외한 다른 관리소, 정치범교화소는 탈북민을 통한 증언 수집 및 교차 검증이 불가능했다. 향후 보다 세밀한 수용규모 추정을 위해 14호, 16호, 25호에 대한 관리성원 및 경험자 등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관리소의 수용규모, 형태, 용도, 수감대상 범위, 관리 체계, 해제 절차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치범교화소의 경우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북한의 법규와 ‘잠정’이라는 명칭이 표기된 내부 문건을 통해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정치범교화소 수용이 기존에 알려졌었던 것처럼 국가보위성의 재판과 판결에 의해 결정되는지, 아니면 다른 일반 형사사건처럼 재판소의 노동교화형 선고와 집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관리소 수용 절차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정치범교화소와 관리소의 법적 처리 절차와 관리, 운영 실태가 시기별로도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조사·연구가 요구된다.

위성사진 분석, 탈북민 증언을 바탕으로 관리소와 정치범교화소 실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나가면서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정치범 수용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꾸준히 촉구해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의 특별절차 또는 UPR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북한 문헌에 이주민관리소와 정치범교화소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차기 북한 UPR 개최 시 유엔 회원국들의 사전질의와 상호대화 권고를 통해 관리소와 정치범교화소의 운영 여부와 정보 제공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문헌에 정치범에 대한 서술이 있다는 점을 근

거로 정치범이 없다는 북한 주장을 반박하며 몇 명의 북한 주민이 정치범 명목으로 수용되어 있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관리소와 정치범교화소 운영 현황과 실태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강·보완해 가야 한다. 동시에 북한 관리소의 해체와 수용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관리소를 해체하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교화소에 수감하되, 정치범교화소의 경우에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감제도를 개혁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들이 관리소의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권고 내용을 마련하여 북한의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국가정보원.

『2024북한법령집』.

서울: 국가정보원, 2024.

법무부.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통합판)』.

서울: 법무부, 2023.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서울: 법원행정처, 2006.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 정치범수용체계와 인권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이무철 외.

『북한인권백서 2024』.

서울: 통일연구원, 2024.

이규창 외.

『북한인권백서 2020』.

서울: 통일연구원, 2020.

최봉대.

『북한이탈주민 법의식 사례 연구』.

통일부 정책연구용역결과보고서, 2011.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2024 북한인권보고서』.

서울: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2024.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16.

사회안전부출판사.

『주민등록사업참고서』.

사회안전부출판사, 1993.

HRNK.

North Korea's Political Prison Camp Kwan-li-so No. 14, Update 1. 2021.

HRNK.

Switchback: Evidence of a Connection between Kwan-li-so No. 16 and the Punggye-ri Nuclear Test Facility? 2023.

2. 유엔 문서

A/79/277

A/HRC/13/13

A/HRC/22/57

A/HRC/25/CRP.1

A/HRC/25/63

A/HRC/27/10

A/HRC/34/66/Add.1

A/HRC/40/36

A/HRC/42/10

A/HRC/42/10/Add.1

A/HRC/58/11

A/HRC/58/61

A/HRC/WGAD/2012/4

A/HRC/WG.6/6/PRK/3

A/HRC/WG.6/47/PRK/2

CCPR/C/PRK/QPR/3

E/CN.4/Sub.2/1998/L.7

3. 기타

『연합뉴스』.

『미국의 소리』.

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https://state.gov>.

Google Earth Pro. 2025. 북한 위성 이미지.

<https://earth.google.com/web>.

북한의 정치범 수용시설

2013 북한 정치범수용소 개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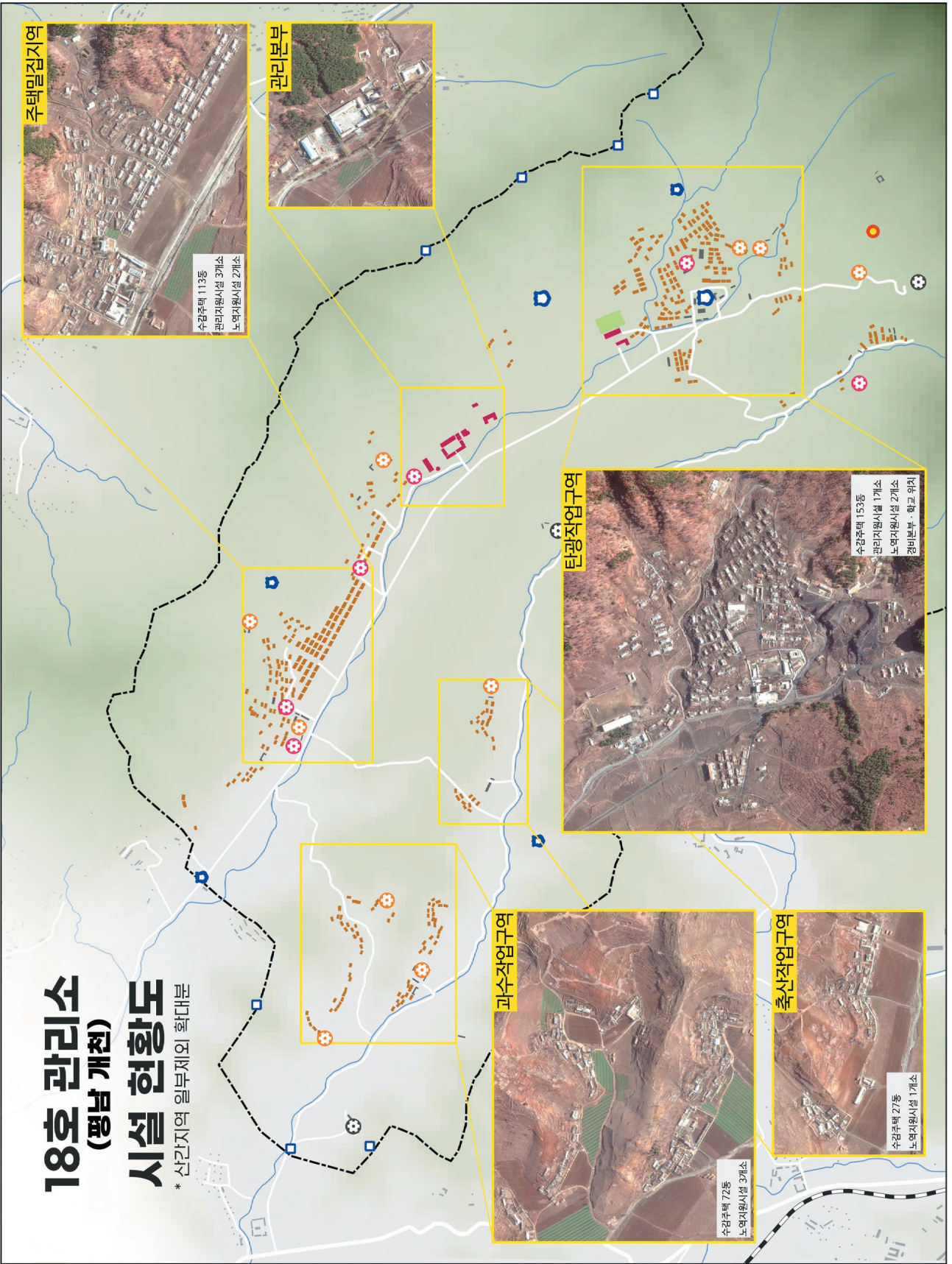
발행일 2025년 8월 27일
저 자 김수암, 이규창, 이금순, 최규빈, 홍예선
발행인 김천식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인권연구실장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9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디자인 스튜디오 플라카
인쇄처 용성문화사

비매품

18호 관리소 (평남 개천)

시설 현황도

* 산간지역 일부제외 확대본



최근 10여 년간 북한의 정치범 수용시설은 일부가 폐쇄되는 등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보고서는 수감 및 해제 절차를 분석하고 현재의 수감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정치범 수용시설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와 노력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